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	--

회계년도	예산	결산	추경
2021	○		

공통요구자료	Ⅱ-1
--------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주택도시기금·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2021. 1.

국 토 교 통 부

목 차

I . 주택도시기금	1
1. 수 입	3
(1) 정부출자수입(주택)	3
(2) 기타민간이자수입(주택)	4
(3) 법정부담금	5
(4) 기타경상이전수입	6
(5) 기타잡수입(주택)	7
(6)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주택)	8
(7) 국공채발행수입	9
(8)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주택)	11
(9)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주택)	12
(10) 일반회계전입금	13
(11) 기금전입금	14
(12) 기금예탁원금회수	15
(13) 기금예수금	16
(14) 기타민간예수금	17
(15) 기금예탁이자수입	18
(16) 정부출자수입(도시)	19
(17) 기타민간이자수입(도시)	20
(18) 기타잡수입(도시)	21
(19) 정부출자주식매각대	22
(20)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도시)	23
(21) 계정간전입금	24
2. 지 출	25
(1)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1038-401)	25
(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 (1041-401)	28
(3) 이차보전 지원 (1042-401)	30
(4)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1071-798)	32
(5) 국공채이자상환 (1071-799)	34
(6) 위탁수수료(주택) (1076-600)	36
(7) 기타경비(주택) (1077-634)	38

(8) 위험건축물이주자금지원 (1131-403).....	40
(9) 주택성능보강(1131-406).....	42
(10) 분양주택(융자) (1134-401).....	45
(11)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1231-401).....	47
(12) 국민임대(융자) (1332-401).....	51
(13) 공공임대(융자) (1333-401).....	54
(14) 집주인임대주택사업 (1333-402).....	57
(15) 민간임대(융자) (1333-404).....	59
(16) 행복주택(융자) (1335-401).....	62
(17) 다가구매입임대(융자) (1336-401).....	64
(18) 전세임대(융자) (1337-401).....	67
(19) 통합공공임대(융자) (1338-406).....	70
(20) 다가구매입임대출자 (1440-402).....	72
(21) 전세임대경상보조 (1440-403).....	75
(22) 국민임대출자 (1440-404).....	78
(23) 영구임대출자 (1440-407).....	80
(24) 행복주택출자 (1440-408).....	82
(25) 임대주택리츠출자 (1440-409).....	84
(26) 통합공공임대출자 (1440-411).....	87
(27)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1440-412).....	89
(28) 사학진흥기금 예탁 (9002-900).....	92
(29)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9003-910).....	95
(30)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계정) 예수원금상환(9110-911).....	97
(31) 공무원연금기금 예수원금상환(9130-910).....	99
(32)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계정) 예수이자상환(9201-921).....	101
(33) 공무원연금기금 예수이자상환(9220-920).....	103
(34) 도시계정 전출(9310-999).....	105
(35) 통화금융기관예치금(주택) (9701-971).....	107
(36)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주택) (9701-972).....	109
(37) 기타여유자금운용(주택) (9701-973).....	111
(38)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 (9850-980).....	113
(39) 국공채원금상환 (9860-980).....	115
(40) 도시재생사업지원(1510-992).....	117
(41) 도시재생지원(융자)(1510-997).....	120
(42) 도시재생지원(출자)(1510-998).....	122
(43)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1520-992).....	125
(44) 도시재생씨앗융자(1520-994).....	127
(45) 가로주택정비사업 (1520-995).....	129

(46) 자율주택정비사업 (1520-996)	132
(47) 위탁수수료(도시)(1530-600)	135
(48) 기타경비(도시)(1540-634)	137

II.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139

1. 수 입 141

(1) 비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141
(2) 기타민간이자수입	142
(3) 기타재산수입	143
(4) 법정부담금	145
(5) 기타경상이전수입	146
(6) 기타민간융자금회수	147
(7)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49

2. 지 출 150

(1) 의무보험전산망 (4641-300)	150
(2) 피해자지원 (4641-301)	152
(3) 정부보장사업 (4641-302)	155
(4) 생활지원 및 학자금 융자 (4641-303)	158
(5) 국립교통재활병원 (4641-304)	160
(6)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4641-305)	163
(7) 기금운영비 (4651-306)	166
(8) 통화금융기관예치금 (9701-971)	168

주택도시기금

2. 수 입

1. 정부출자수입(주택)	
52-521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 명	2019년 결 산액	2020년 계 획액		2021년		증 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정부출자수입	311,309	234,687	234,687	416,751	416,751	182,064	77.6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10호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0. 주택계정에서 출자한 기관의 배당수익

나. 수입 개요

- 주택도시기금의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수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7	71,156	71,156	71,156	325,587	325,587	457.6	100.0	-	-
'18	174,399	174,399	174,399	354,617	354,617	203.3	100.0	-	-
'19	376,668	376,668	376,668	311,309	311,309	82.7	100.0	-	-
'20.11	234,687	234,687	234,687	302,801	302,801	129.0	100.0	-	-
'21	416,751	-	-	-	-	-	-	-	-

2. 기타민간이자수입(주택)

54-544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 명	2019년 결 산 액	2020년 계 획 액		2021년		증 감	
		당 초	수 정 (A)	정 부 안	국 회 확 정 (B)	(B-A)	(B-A)/A
기타민간이자수입	2,681,604	3,075,152	3,075,152	3,251,407	3,251,407	176,255	5.7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9호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9. 주택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나. 수입 개요

- 주택건설, 주택구입·전세 자금 등 주택 사업자 및 수요자에게 지원된 대출금의 이자 수입과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등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 초	수 정 (A)							
'17	2,853,700	2,853,700	2,853,700	3,147,700	2,417,213	84.7	76.8	699,635	30,852
'18	2,693,100	2,693,100	2,693,100	3,047,803	2,470,044	91.7	81.0	551,683	26,076
'19	3,001,727	3,001,727	3,001,727	3,244,186	2,681,604	89.3	82.7	532,890	29,692
'20.11	3,075,152	3,075,152	3,075,152	2,463,996	2,463,996	80.1	100.0	-	-
'21	3,251,407	-	-	-	-	-	-	-	-

3. 법정부담금
59-593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법정부담금	-	2,000	2,000	5,000	5,000	3,000	150.0

가. 법적 근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징수금의 배분)①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50이, 해당 특별시·광역시·도에 100분의 30이,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100분의 50이, 해당 시·군·구에 100분의 20이 각각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나. 수입 개요

-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재건축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징수하는 법정부담금

※ 수입의 출처 : 재건축조합에 부과, 부과기준(율) : 조합원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 누진적용,
납기일정 : 부과일로부터(준공부터 5월이내) 6월이내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7	1,053	1,053	1,053	-	-	-	-	-	-
'18	1,030	1,030	1,030	-	-	-	-	-	-
'19	1,075	1,075	1,075	-	-	-	-	-	-
'20.11	2,000	2,000	2,000	-	-	-	-	-	-
'21	5,000		-	-	-	-	-	-	-

※ '20년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 6월말 현재 기준

4.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67,658	80,326	80,326	88,930	88,930	8,604	10.7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9호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2항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9. 주택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수입 개요

- 전년도 교부 결정된 국고보조금(다가구매입임대출자, 전세임대경상보조 등) 정산에 따른 반납수입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7	5,000	5,000	5,000	52,930	52,930	1,058.6	100.0	-	-
'18	41,846	41,846	41,846	146,201	146,201	349.4	100.0	-	-
'19	47,000	47,000	47,000	67,658	67,658	144.0	100.0	-	-
'20.11	80,326	80,326	80,326	15,100	15,100	18.8	100.0	-	-
'21	88,930	-	-	-	-	-	-	-	-

5. 기타잡수입(주택)
69-691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기타잡수입	51,627	67,780	67,780	67,780	67,780	-	-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9호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9. 주택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나. 수입 개요

- 예산과목으로 명시된 수입을 제외한 공탁금, 소멸시효완성채권, 특수채권이자수입 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7	50,000	50,000	50,000	64,904	64,904	129.8	100.0	-	-
'18	53,540	53,540	53,540	72,833	72,833	136.0	100.0	-	-
'19	50,000	50,000	50,000	51,627	51,627	103.3	100.0	-	-
'20.11	67,780	67,780	67,780	22,972	22,972	33.9	100.0	-	-
'21	67,780	-	-	-	-	-	-	-	-

6.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주택)

75-754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 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1,244,091	12,455,257	12,455,257	13,540,459	13,540,459	1,085,202	8.7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9호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9. 주택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나. 수입 개요

- 주택건설, 주택구입·전세자금 등 사업자나 수요자에게 대출 후 약정에 따라 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함으로써 조성되는 자금
- 상환방법
 - 정기상환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
 - 일시상환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이자만 지급하고 만기일에 대출원금 전액을 상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정액
	당초	수정(A)							
'17	13,615,746	13,615,746	13,615,746	10,684,391	10,241,452	75.2	95.9	423,701	19,239
'18	13,615,700	13,615,700	13,615,700	9,895,744	9,481,366	69.6	95.8	402,379	11,999
'19	12,488,700	12,488,700	12,488,700	11,766,108	11,244,091	90.0	95.6	506,736	15,281
'20.11	12,455,257	12,455,257	12,455,257	13,546,818	13,546,818	108.8	100.0	-	-
'21	13,540,459	-	-	-	-	-	-	-	-

7. 국공채발행수입
81-811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국공채수입	15,418,008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	-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나. 수입 개요

-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 제1종 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등에게 발행하는 채권
 - 제2종 채권은 공공택지내의 85㎡초과 분양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와 현시세와의 차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분양자에게 발행하는 채권

구 분	이 율	기 간	내 용
제1종국민주택채권	연 1.00%	5년	인·허가, 등기, 등록시 첨가발행
제2종국민주택채권	연 0% (99.7.15이전발행분 3.0%)	10년	공공택지내의 85㎡ 초과 분양 아파트에 대해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발행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7	15,000,000	15,000,000	15,000,000	14,342,052	14,342,052	95.6	100.0	-	-
'18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116,172	15,116,172	100.8	100.0	-	-
'19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418,008	15,418,008	102.8	100.0	-	-
'20.11	15,000,000	15,000,000	15,000,000	16,780,640	16,780,640	111.9	100.0	-	-
'21	15,000,000	-	-	-	-	-	-	-	-

8.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주택)

85-852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919,254	2,150,000	2,150,000	1,234,080	1,234,080	△915,920	△42.6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9호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9. 주택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나. 수입 개요

- 조성한 자금 중 융자사업, 차입금 상환 등에 운용하고 남은 잉여자금으로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을 사업비 지출을 위해 회수
-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자금(MMDA, 각 수탁기관 예치금)으로 구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7	3,733,330	3,733,330	3,733,330	916,155	916,155	24.5	100.0	-	-
'18	1,708,328	1,708,328	1,708,328	1,334,891	1,334,891	78.1	100.0	-	-
'19	2,150,000	2,150,000	2,150,000	919,254	919,254	42.8	100.0	-	-
'20.11	2,150,000	2,150,000	2,150,000	697,491	697,491	32.4	100.0	-	-
'21	1,234,080	-	-	-	-	-	-	-	-

9.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주택)

85-853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4,009,908	21,111,004	21,111,004	15,327,196	15,327,196	△5,783,808	△27.4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9호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9. 주택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나. 수입 개요

- 조성한 자금 중 융자사업, 차입금 상환 등에 운용하고 남은 잉여자금으로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을 사업비 지출을 위해 회수
- 만기 1년 이상의 중장기자금(MMF, 전담운용기관, 연기금투자펀)으로 구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마수납액	불납결산액
	당초	수정(A)							
'17	8,500,000	8,500,000	8,500,000	12,345,870	12,345,870	145.2	100.0	-	-
'18	10,673,432	10,673,432	10,673,432	10,511,155	10,511,155	98.5	100.0	-	-
'19	14,039,437	14,039,437	14,039,437	14,009,908	14,009,908	99.8	100.0	-	-
'20.11	21,111,004	21,111,004	21,111,004	22,745,000	22,745,000	107.7	100.0	-	-
'21	15,327,196	-	-	-	-	-	-	-	-

10. 일반회계전입금

91 - 911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 명	2019년 결 산 액	2020년 계 획 액		2021년		증 감	
		당 초	수 정 (A)	장 브 인	확 정 (B)	(B-A)	(B-A)/A
일반회계전입금	1,736,807	2,424,024	2,424,024	3,613,593	3,593,621	1,169,597	48.3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4호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나. 수입 개요

- 장기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자체에 건설비용의 일부를 출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입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 초	수 정(A)							
'17	717,373	923,819	923,819	923,819	923,819	100.0	100.0	-	-
'18	944,762	1,037,970	1,037,970	1,037,970	1,037,970	100.0	100.0	-	-
'19	1,639,702	1,736,807	1,736,807	1,736,807	1,736,807	100.0	100.0	-	-
'20	2,424,024	2,424,024	2,424,024	1,546,615	1,546,615	63.8	100.0	-	-
'21(안)	3,224,521	3,593,621	-	-	-	-	-	-	-

11. 기금전입금

91 - 913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기금전입금	592,709	550,361	550,361	550,361	550,361	-	-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1호

제5조(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나. 수입 개요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총수익금의 일정액을 임대주택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 배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7	567,170	567,170	567,170	567,170	567,170	100.0	100.0	-	-
'18	550,361	550,361	550,361	550,361	550,361	100.0	100.0	-	-
'19	592,709	592,709	592,709	592,709	592,709	100.0	100.0	-	-
'20.11	550,361	550,361	550,361	550,361	550,361	100.0	100.0	-	-
'21	550,361	-	-	-	-	-	-	-	-

12. 기금예탁원금회수

92-923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기금예탁원금 회수	9,583,478	8,434,979	8,434,979	11,224,741	11,224,741	2,789,762	33.1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9호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9. 주택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나. 수입 개요

- 주택도시기금이 타 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사학진흥기금 등)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회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마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7	5,720,350	5,720,350	5,720,350	5,720,350	5,720,350	100.0	100.0	-	-
'18	10,201,724	10,201,724	10,201,724	10,201,724	10,201,724	100.0	100.0	-	-
'19	9,553,478	9,553,478	9,553,478	9,583,478	9,583,478	100.3	100.0	-	-
'20.11	8,434,979	8,434,979	8,434,979	7,434,979	7,434,979	88.1	100.0	-	-
'21	11,224,741	-	-	-	-	-	-	-	-

13. 기금예수금
94-943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 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기금예수금	-	-	-	10,000	10,000	10,000	순증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6조(자금의 기금 예탁)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공무원연금기금

나. 수입 개요

- 주택도시기금이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 예수 받은 자금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마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7	-	-	-	-	-	-	-	-	-
'18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	100.0	-	-
'19	-	-	-	-	-	-	-	-	-
'20.11	-	-	-	-	-	-	-	-	-
'21	10,000	-	-	-	-	-	-	-	-

14. 기타민간예수금
94-946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기타민간예수금	16,207,446	17,729,600	17,729,600	16,977,000	16,977,000	△752,600	△4.2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2호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주택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나. 수입 개요

- 무주택 세대주가 월저축한도액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한 날짜에 납입하는 청약저축 및 종합저축 납부금 수입액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7	17,528,120	17,528,120	17,528,120	18,326,998	18,326,998	104.6	100.0	-	-
'18	17,108,500	17,108,500	17,108,500	17,070,793	17,070,793	99.8	100.0	-	-
'19	17,546,400	17,546,400	17,546,400	16,207,446	16,207,446	92.4	100.0	-	-
'20.11	17,729,600	17,729,600	17,729,600	19,109,683	19,109,683	107.8	100.0	-	-
'21	16,977,000	-	-	-	-	-	-	-	-

15. 기금예탁이자수입

95-953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 명	2019년 결 산 액	2020년 계 획 액		2021년		증 감	
		당 초	수 정 (A)	정 부 안	국 회 확 정 (B)	(B-A)	(B-A)/A
기금예탁이자수입	171,204	152,087	166,156	241,532	241,532	75,376	45.4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9호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9. 주택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나. 수입 개요

- 주택도시기금이 타 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사학진흥기금 등)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 수입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장 수 결 장 액 (B)	수 납 액 (C)	수 납 율 (C/A)	수 납 율 (C/B)	미 수 납 액	불 납 결 손 액
	당 초	수 정 (A)							
'17	232,553	232,553	232,553	166,663	166,663	71.7	100.0	-	-
'18	262,422	262,422	262,422	197,405	197,405	75.2	100.0	-	-
'19	291,153	291,153	291,153	171,204	171,204	58.8	100.0	-	-
'20.11	152,087	166,156	166,156	101,254	101,254	60.9	100.0	-	-
'21	241,532	-	-	-	-	-	-	-	-

16. 정부출자수입(도시)
52-521

< 기금명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정부출자수입	-	810	810	5,405	650	△160	△19.8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2항제6호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②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도시계정에서 출자한 기관의 배당수익

나. 수입 개요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리츠 등 사업시행자에게 지원된 기금 출자금에 대한 배당수입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7	-	-	-	-	-	-	-	-	-
'18	-	-	-	-	-	-	-	-	-
'19	810	810	810	-	-	-	-	810	-
'20.11	810	810	810	2,035	2,035	251.2	100.0	-	-
'21(안)	650	-	-	-	-	-	-	-	-

17. 기타민간이자수입(도시)

69-691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기타민간이자 수입	13,107	19,049	19,049	39,497	39,497	20,448	107.3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2항제5호

제5조(기금의 재원 등) ②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도시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도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나. 수입 개요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지원된 도시계정 사업*의 이자수입

* i) 도시재생지원(출자), ii) 도시재생지원(융자), iii) 도시기능증진지원(융자)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7	1,128	1,128	1,128	817	817	72	100.0	-	-
'18	5,248	5,248	5,248	4,414	4,414	84.1	100.0	-	-
'19	17,480	17,480	17,480	13,107	13,107	75.0	100.0	-	-
'20.11	19,049	19,049	19,049	11,765	11,765	61.8	100.0	-	-
'21(안)	39,497	-	-	-	-	-	-	-	-

18. 기타잡수입(도시)
69-691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기타잡수입	-	200	200	200	200	-	-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2항제5호

제5조(기금의 재원 등) ②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도시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도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나. 수입 개요

- 채권보전 및 소송비용 회수, 특수채권에 편입된 계좌의 회수로 입금된 이자액 등 기타 잡수입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7	-	-	-	-	-	-	-	-	-
'18	-	-	-	-	-	-	-	-	-
'19	-	-	-	-	-	-	-	-	-
'20.11	200	200	200	-	-	-	-	-	-
'21(안)	200	-	-	-	-	-	-	-	-

19. 정부출자주식매각대

78-781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정부출자주식 매각대	-	-	-	-	5,000	5,000	순증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2항제5호

제5조(기금의 재원 등) ②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도시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도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나. 수입 개요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리츠 등 사업시행자에게 지원된 기금 출자금의 원금회수 수입

다. 최근 4개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6	-	-	-	-	-	-	-	-	-
'17	-	-	-	-	-	-	-	-	-
'18	-	-	-	-	-	-	-	-	-
'19	-	-	-	-	-	-	-	-	-
'20.11	-	-	-	600	600	-	100.0	-	-
'21(안)	5,000	-	-	-	-	-	-	-	-

20.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도시)

85-852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 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429,329	10,000	10,000	10,000	10,000	-	-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2항제5호

제5조(기금의 재원 등) ②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도시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도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나. 수입 개요

- 전년도 조성금액에서 운용금액을 차감한 전년도 이월금액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7	-	-	-	32,702	32,702	-	100.0	-	-
'18	10,000	10,000	10,000	86,071	86,071	860.7	100.0	-	-
'19	10,000	10,000	10,000	429,329	429,329	4,293.3	100.0	-	-
'20.11	10,000	10,000	10,000	13,992	13,992	139.9	100.0	-	-
'21(안)	10,000	-	-	-	-	-	-	-	-

21. 계정간전입금
91-915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 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계정간전입금	587,423	507,449	457,223	902,221	901,976	444,753	97.3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2항제9호

제5조(기금의 자원 등) ②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9.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나. 수입 개요

-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예정인 도시재생사업(출·융자)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주택계정에서 도시계정으로 전입

다. 최근 4개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6	40,100	40,100	40,100	40,100	40,100	100.0	100.0	-	-
'17	63,493	101,493	101,493	101,493	101,493	100.0	100.0	-	-
'18	674,865	674,865	674,865	674,865	674,865	100.0	100.0	-	-
'19	587,423	587,423	587,423	587,423	587,423	100.0	100.0	-	-
'20.11	507,449	457,223	457,223	150,000	150,000	32.8	100.0	-	-
'21(안)	901,976	-	-	-	-	-	-	-	-

2. 지 출

사 업 명						
(1)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1038-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57	26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8	401
명칭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재건축초과이익지자체배분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재건축초과이익자본 이전	-	-	-	1,100	1,100	1,100	순증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1,100
· 재건축초과이익자본 이전	-	-	-	-	-	-	-	-	-	-	-	1,1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1,100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	-	-	-	-	-	-	-	-	-	-	1,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여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4조 (징수금의 배분)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귀속되는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또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각각 100분의 50을 지원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원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추진경위

- '06. 5 :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제도 도입
- '12. 12 :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자 '14.12월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조합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
- '14. 12 :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자 '17.12월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조합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
- '18. 1 :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도 재시행
- '19.12 : 헌법재판소 재건축부담금제도 “합헌” 결정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6년~계속
- 사업규모 : '21년 11억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지자체보조)	5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사 업 명						
(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 (1041-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1	401
명칭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주택신보출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일반출연금	112,702	103,250	103,250	114,746	114,746	11,496	11.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 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00,184	112,830	112,830	112,702	-	128	103,250	103,250	103,250	95,216	-	-	114,746
·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출연	100,184	112,830	112,830	112,702	-	128	103,250	103,250	103,250	95,216	-	-	114,746
○ 비목별 분류(계)	100,184	112,830	112,830	112,702	-	128	103,250	103,250	103,250	95,216	-	-	114,746
· 금융성기금 출연금(350-03)	100,184	112,830	112,830	112,702	-	128	103,250	103,250	103,250	95,216	-	-	114,74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기능을 통한 주택자금 용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87. 5. : '87년 5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 납입
- '03. 12.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 공포
- '04. 2. : 한국금융공사법시행령 제정 공포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87~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직접 수행
- 사업 수혜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평잔× 출연요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4조

사 업 명						
(3) 이차보전 지원 (1042-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주택	사회복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2	401
명칭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이차보전 지원	이차보전 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민간이전	217,821	250,507	250,507	338,758	338,758	88,251	35.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산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집행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집행액]	이 월 예 상 액	불 용 예 상 액	
	당 초	수 정					당 초	수 정					
○ 기능별 분류(계)	190,287	217,822	217,822	217,821	-	1	250,507	250,507	250,507	149,771	-	-	338,758
· 이차보전 지원	190,287	217,822	217,822	217,821	-	1	250,507	250,507	250,507	149,771	-	-	338,758
○ 비목별 분류(계)	190,287	217,822	217,822	217,821	-	1	250,507	250,507	250,507	149,771	-	-	338,758
· 이 차 보 전 금 (320-05)	190,287	217,822	217,822	217,821	-	1	250,507	250,507	250,507	149,771	-	-	338,75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정건전성 도모와 재정지출 확대의 두가지 효과를 위해 기존의 직접융자방식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변경하여 분양주택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에 대해 이차보전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② 추진경위 : 기금의 재정건전성 도모를 위해 2013년부터 시행
 - '1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공공분양주택사업,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 '14년 디딤돌대출 주금공 취급분에 대해서도 이차보전
 - '18년 디딤돌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은행채권 취급분에 대해서도 이차보전지원 시행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3년 ~
- 사업규모(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 억원)

연도	'16계획	'17계획	'18계획	'19계획	'20계획
사업비	1,341	1,131	1,043	1,903	2,505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 사업 수혜자 : 분양주택건설사업자, 주택 구입자 및 임차 희망자

사 업 명
(4)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1071-79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71	798
명칭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이자상환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상환지출	743,078	886,800	886,800	875,800	875,800	△11,000	△1.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말)						2021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이자상환	766,800	766,800	766,800	743,078	-	23,722	886,800	886,800	886,800	565,457	-	-	875,800
· 기타민간예수금 이자상환	766,800	766,800	766,800	743,078	-	23,722	886,800	886,800	886,800	565,457	-	-	875,800
○ 기타민간예수금 이자상환	766,800	766,800	766,800	743,078	-	23,722	886,800	886,800	886,800	565,457	-	-	875,800
· 민간예수금이자 (510-09)	766,800	766,800	766,800	743,078	-	23,722	886,800	886,800	886,800	565,457	-	-	875,8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재원 마련을 위해 청약저축으로부터 유입된 자금 중 청약저축 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4호

☐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이자상환
- 사업시행주체 : 직접 수행
- 사업 수혜자 : 청약저축 가입자

사 업 명						
(5) 국공채이자상환 (1071-79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주택	사회복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71	799
명칭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이자상환	국공채이자상환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상환지출	1,341,680	1,524,400	1,524,400	1,140,800	1,140,800	△383,600	△25.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말)						2021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이자상환	1,319,600	1,350,800	1,350,800	1,341,680	-	9,120	1,524,400	1,524,400	1,524,400	1,398,308	-	-	1,140,800
· 국공채이자상환	1,319,600	1,350,800	1,350,800	1,341,680	-	9,120	1,524,400	1,524,400	1,524,400	1,398,308	-	-	1,140,800
○ 국공채이자상환	1,319,600	1,350,800	1,350,800	1,341,680	-	9,120	1,524,400	1,524,400	1,524,400	1,398,308	-	-	1,140,800
· 차입금이자 (510-03)	1,319,600	1,350,800	1,350,800	1,341,680	-	9,120	1,524,400	1,524,400	1,524,400	1,398,308	-	-	1,140,8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주택채권으로부터 유입된 자금 중 채권만기 도래 등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4호

☐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이자상환
- 사업시행주체 : 직접 수행
- 사업 수혜자 : 국민주택채권 매입자

사 업 명						
(6) 위탁수수료(주택) (1076-6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76	600
명칭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수탁은행관리	위탁수수료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운영비	238,215	152,392	152,392	238,605	238,605	86,213	56.6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말)						2021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수탁은행 관리	165,374	240,170	240,170	238,215	-	1,955	152,392	152,392	152,392	118,091	-	-	238,605
· 위탁수수료	165,374	240,170	240,170	238,215	-	1,955	152,392	152,392	152,392	118,091	-	-	238,605
○ 위탁수수료	165,374	240,170	240,170	238,215	-	1,955	152,392	152,392	152,392	118,091	-	-	238,605
· 일반운영비 (210-14)	143,288	179,223	179,223	178,396	-	827	116,411	116,411	116,411	89,511	-	-	178,787
· 기타운영비 (210-16)	22,086	60,947	60,947	59,818	-	1,129	35,981	35,981	35,981	28,580	-	-	-
· 일반수용비 (210-01)	-	-	-	-	-	-	-	-	-	-	-	-	48,309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	-	-	-	-	-	-	-	-	-	-	-	11,50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를 담당하는 전담기관 및 수탁은행에 지급하는 관리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② 추진경위

- '81.07.20 : 평균잔액의 2.2%
- '84.09.19 : 평균잔액의 2.0~1.7%
- '86.07.01 : 대출금잔액의 1.5%
- '89.04.10 : 대출금잔액의 1.17~0.75%
- '93.01.01 : 계정별 단위업무의 업무량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03. 2. 1 : 활동기준원가(Active Based Costing : ABC)를 산출하고 이를 정상처리 건수에 곱하여 위탁수수료를 산정
- '13.04.01 : 주택법 시행규칙 수수료의 50%(단, 사업자대출은 40%) 협약
- '15.07.01 :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 개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

☐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위탁수수료 지급
- 사업시행주체 : 직접 수행
- 사업 수혜자 : 기금 수탁은행 및 전담운용기관 등

사 업 명
(7) 기타경비(주택) (1077-63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77	634
명칭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기금운영비	기타경비(주택)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운영비 등	769	551	551	350	350	△201	△36.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말)						2021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금운영비	742	742	1,004	769	56	180	551	551	607	258	-	-	350
· 기타경비	742	742	1,004	769	56	180	551	551	607	258	-	-	350
○ 기타경비	742	742	1,004	769	56	180	551	551	607	258	-	-	350
· 일반수용비 (210-01)	157	157	157	157	-	-	129	129	129	21	-	-	131
· 국내여비 (220-01)	10	10	10	10	-	-	10	10	10	5	-	-	9
· 국외교육여비 (220-03)	118	239	239	138	-	56	118	118	118	93	-	-	-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38	38	38	38	-	-	38	38	38	33	-	-	30
· 일반연구비 (260-01)	180	180	442	371	56	16	180	180	236	100	-	-	180
· 기타보전금 (310-04)	239	118	118	11	-	107	76	76	76	7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필수 경비 및 주택정책·주택금융 및 임대주택 활성화 등에 관한 연구를 위한 연구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연구 및 교육 등 비용지급
- 사업시행주체 : 직접 수행
- 사업 수혜자 : 기금 수요자(주택도시 분야 제도개선의 수혜자)

사 업 명						
(8) 위험건축물이주자금지원 (1131-4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57	26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403
명칭	분양주택등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융자)	위험건축물이주자금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위험건축물이주자금 지원	6,031	9,500	9,500	9,500	9,500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산
	예 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 산액		예 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0,000	10,000	6,031 [6,031]	-	3,969	9,500	9,500	12,500	11,891 [11,891]	-	-	9,500
· 위험건축물이주자금 지원	10,000	10,000	6,031 [6,031]	-	3,969	9,500	9,500	12,500	11,891 [11,891]	-	-	9,500
○ 비목별 분류(합계)	10,000	10,000	6,031 [6,031]	-	3,969	9,500	9,500	12,500	11,891 [11,891]	-	-	9,500
· 기 타 민 간 융 자 금 (450-04)	10,000	10,000	6,031 [6,031]	-	3,969	9,500	9,500	12,500	11,891 [11,891]	-	-	9,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안전위험 주택은 신속한 이주 및 정비가 필요하나, 주민 소득수준이 낮고 이주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원활한 이주가 어려움
- 국가차원의 이주비 저리융자지원을 통해 안전위험 주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노후한 위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제9조 (기금의 재원 등)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

- ② 추진경위

- '17. 7 :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대출 추정 예산 신규 반영(120억원)
- '18. 3 :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대출사업 대상 확대*

* 정비사업 절차 상 이주단계에 있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노후·불량 건축물에 직접 거주하는 세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7년~계속
- 사업규모 : '21년 95억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은행에 위탁)
- 사업 수혜자 : 안전위험 주택 거주자, 노후·불량건축물 거주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안전위험 주택 거주자, 노후·불량건축물 거주자, 공공기관	금리 1.3	주택도시기금법제9조제1항 제1호나목

사 업 명						
(9) 주택성능보강(1131-4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406
명칭	분양주택등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융자)	주택성능보강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기타민간융자금 (450-04)	-	15,000	-	10,000	3,000	△12,000	△80.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 산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집행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집행액]	이 월 예 상 액	불 용 예 상 액	
	당 초	수 정					당 초	수 정					
○ 기능별 분류(계)	50,000	-	-	-	-	-	15,000	15,000	15,000	-	-	-	3,000
· 주택성능보강	50,000	-	-	-	-	-	15,000	15,000	15,000	-	-	-	3,000
○ 비목별 분류(계)	50,000	-	-	-	-	-	15,000	15,000	15,000	-	-	-	3,000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50,000	-	-	-	-	-	15,000	15,000	15,000	-	-	-	3,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주거시설에 대하여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해 성능보강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용자 지원하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1호(기금의 용도)

제9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
라. 준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
마.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 건축물관리법 제29조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제29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① (생략)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는 경우 건축물의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관리자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8. 2, 「화재안전대책 특별TF」 구성(단장: 정책실장)
- '18. 3, 국토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TF」 구성·운영
- '18. 4, 정부합동 「화재안전 특별대책 추진계획」 발표(국무회의)
- '19. 2,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및 용자지원 실시
- '19. 4, 정부합동 「화재안전 특별대책」 발표(국무회의)
- '19. 4, 「건축물관리법」 제정('20.5.1 시행)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 ~ '22
- 사업규모 : 약 2,500개동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직접시행(기금수탁은행)
- 사업 수혜자 :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주택 소유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화재취약주택 등 거주자	금리 1.2%	주택도시기금법제9조제1항 제1호나목

사 업 명						
(10) 분양주택(융자) (1134-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4	401
명칭	분양주택등지원	분양주택지원(융자)	분양주택(융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분양주택융자	219,410	270,478	145,478	478,227	478,227	332,749	228.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 산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300,531	229,068	229,068	219,410 (219,410)	-	9,658	270,478	145,478	145,478	109,074 (109,074)	-	-	478,227
· 분양주택(융자)	300,531	229,068	229,068	219,410 (219,410)	-	9,658	270,478	145,478	145,478	109,074 (109,074)	-	-	478,227
○ 비목별 분류(계)	300,531	229,068	229,068	219,410 (219,410)	-	9,658	270,478	145,478	145,478	109,074 (109,074)	-	-	478,227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300,531	229,068	229,068	219,410 (219,410)	-	9,658	270,478	145,478	145,478	109,074 (109,074)	-	-	478,22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촉진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제1항

② 추진경위

- '83.06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주택 건설지원을 위해 공공분양자금 신설
- '08.09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발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공공분양 70만호) 건설)
- '13.0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공공주택 연 13만호(임대11만호, 분양2만호) 공급)
*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포함('13~'17년 까지 승인기준 20만호)
- '17.11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공공분양주택 연평균 3.0만호 공급)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83~계속
- 사업규모 : '21년 0.7만호 착공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민간사업자
- 사업 수혜자 : 무주택 서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민간사업자	호당 55~75백만원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사 업 명						
(11)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1231-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주택	사회복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401
명칭	구입·전세자금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주택구입· 전세자금(융자)	9,412,393	9,399,200	9,399,200	10,700,000	9,900,000	500,800	5.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7844,200	9413,000	9412,393	-	607	9399,200	9,399,200	9,915,100	9,260,029	-	-	9,900,000
·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	7844,200	9413,000	9412,393	-	607	9399,200	9,399,200	9,915,100	9,260,029	-	-	9,900,000
○ 비목별 분류(합계)	7844,200	9413,000	9412,393	-	607	9399,200	9,399,200	9,915,100	9,260,029	-	-	9,900,000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7844,200	9413,000	9412,393	-	607	9399,200	9,399,200	9,915,100	9,260,029	-	-	9,90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무주택 서민층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의 원활한 지원 및 저소득 서민에 대한 전월세 자금 지원으로 자금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생활 영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금융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라목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

라. 준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

② 추진경위

<주택구입 자금>

- '94. 4. : 무주택 근로자를 위해 '근로자주택 구입자금' 신설
- '00. 3. : 무주택 서민(근로자 이외의 자)을 위해 '서민주택 구입자금' 신설
- '01. 7. :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신설 (자금부족으로 불연속적으로 운영)
①'01.7~'03.12월, ②'15.11~'06.11월, ③'10.9~'12.7월, ④'13.1~13.11월
- '13. 1. :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이차보전 실행(은행계정으로 집행)
- '13. 9. : '손익/수익공유형 모기지' 신설
- '13. 12. : '손익/수익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실시(12. 9일부터)
- '14. 1. :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출시(대출한도 2억원, 금리 연 2.8%~3.6%)
- '14. 3. : 공유형 모기지 요건 완화(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신청대상 확대)
- '15. 12.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유한책임제도 도입 및 모기지신용보증 담보 취득
- '16. 1.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흥가구 우대금리 및 대출신청 시기 완화
 - * 신흥가구 우대금리 0.2%p 신설 적용
 - * 신흥가구 대상을 결혼 전 2개월에서 결혼 전 3개월까지로 확대하여 대출신청시기를 완화
- '16. 5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생초자 금리우대 확대(최저 1.6%, 6개월 한시)
- '16. 9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인하(2.1~2.9%)

- '17. 1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인상(2.25~3.15%)
- '17. 5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주금공 유동화 재원까지 유한책임대출 확대
- '17. 8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 '17. 12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유한책임대출 연소득 기준 완화(3,0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
- '18. 1 :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 출시(금리 1.7~2.75%)
- '18. 5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유한책임대출 연소득 기준 **全** 소득구간 확대
- '18. 6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육아휴직자 원금상환유예제도 도입(2회, 총2년)
- '18. 7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자 대상 금리인하(2.0%~3.15%)
- '18. 9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혼가구 및 유자녀가구 대출한도 상향(2→2.2~2.4억원)
- '19. 7 : 신혼가구 인정범위 확대(5년 → 7년 이내)
- '19. 9 : 기금 대출절차 간소화(비대면 채널 및 심사시스템 구축) 및 자산심사 기준 도입
- '19. 12 : 다자녀가구 우대혜택 확대(우대금리 및 대출한도 상향)

<전·월세 자금>

- '90. 6. : 영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세민가구 전세자금' 신설
- '94. 4. : 무주택 근로자를 위해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신설
- '00. 3. : 무주택 서민(근로자 이외의 자)을 위해 '서민주택 전세자금' 신설
- '05. 11. : '영세민가구 전세자금' 금리인하(3→2%) 등 조건 개선
- '07. 11. : '영세민가구 전세자금'의 명칭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
- '14. 5. :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지역별 보증금 한도설정(수도권 3억, 지방 2억)
- '15. 1. : '근로자·서민전세'와 '저소득전세' 대출을 통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출시
'주거안정월세대출' 출시(연 2%, 3년간 720만원 한도)
- '15. 4.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인하(2.5~3.1%), 신혼가구 소득요건 완화
주거안정월세대출 금리인하(연 1.5%) 및 사회초년생 추가 등
- '15. 9.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도 버팀목 대출 지원 및
LH 임대주택 입주 고령자 계약금 70%도 지원
- '16. 3 : '안심형' 버팀목전세대출 출시
- '16. 5 : 버팀목전세대출 금리인하(2.3~2.9%) 및 대출 한도상향(수도권 최대 1.4억) 등
- '16. 8 : '주거안정월세대출' 조건 개선(일반형 도입, 대출기간 연장, 취급기관 확대 등)
- '17. 1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확대(0.5 → 0.7%p)
- '17. 2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임대주택 중도금 대출 허용
- '17. 6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분할상환 도입
- '17. 11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 확대(경기도시공사)
- '18. 1 : '신혼부부 전용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 출시(금리 1.2~2.1%),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 출시 및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확대(월 30→40만원)
- '18. 6 :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실시

- '18. 9 : '신혼부부 전용 주택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상향(1.3~1.7억원→1.6~2.0억원)
- '18. 9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유자녀가구 대출한도 상향(0.8~1.2억원→1.6~2.0억원)
- '18. 12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품 출시(금리 1.5~1.8%)
- '19. 7 : 신혼가구 인정범위 확대(5년 → 7년 이내)
- '19. 9 : 기금 대출절차 간소화(비대면 채널 및 심사시스템 구축) 및 자산심사 기준 도입
- '19. 12 : 다자녀가구 우대혜택 확대(우대금리 및 대출한도 상향, 대출기간 확대)
- '19. 12 :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1.8%, 5천만원 한도) 신설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구입자금) 1994년~, (전세자금) 1990년~
- 사업규모 : '17년 127,056억원, '18년 88,095억원, '19년 94,124억원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 사업 수혜자 : 소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서민

구 분	주택구입자금대출 (디딤돌대출)	전세대출 (버팀목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조건	(한도) 호당 2억원 (이율) 1.85~2.40% (기간) 10, 15, 20, 30년	(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율) 1.8%~2.4% (기간) 최장 10년	(한도) 월세금 960만원 (월 40만원) (이율) 일반형 : 2.0% 우대형 : 1.0% (기간) 최장 10년
지원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자, 신혼가구 등은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등은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일반형)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우대형)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주거급여수급자 등

사 업 명						
(12) 국민임대(융자) (1332-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2	401
명칭	임대주택지원(융자)	국민임대주택지원(융자)	국민임대(융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7~42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국민임대융자	733,367	815,402	815,402	827,243	827,243	11,841	1.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 산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795,200	734,200	734,200	733,367 (733,367)	-	833	815,402	815,402	815,402	619,210 (619,210)	-	-	827,243
· 국민임대융자	795,200	734,200	734,200	733,367 (733,367)	-	833	815,402	815,402	815,402	619,210 (619,210)	-	-	827,243
○ 비목별 분류(계)	795,200	734,200	734,200	733,367 (733,367)	-	833	815,402	815,402	815,402	619,210 (619,210)	-	-	827,243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795,200	734,200	734,200	733,367 (733,367)	-	833	815,402	815,402	815,402	619,210 (619,210)	-	-	827,2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제1항

② 추진경위

- '98.10 국민임대주택 5만호 건설계획 수립
- '03.09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 발표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 '08.09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발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국민임대 40만호) 건설)
- '13.0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공공주택 연 13만호(국민임대 3.8만호 등 임대11만호, 분양2만호) 공급)
*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포함('13~'17년 까지 승인기준 20만호)
- '13.12 4.1, 8.2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
* ('13~'17년간) 행복주택 20 → 14만호, 국민임대 등 6 → 11만호, 민간임대 5 → 6만호
- '17.11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공공건설임대주택 연평균 7.0만호 공급)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8~계속
- 사업규모 : '21년 2.2만호 공급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소득 4분위 이하의 무주택 저소득계층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37~42%	공공주택특별법 제3조의2

사 업 명
(13) 공공임대(융자) (1333-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401
명칭	임대주택지원(융자)	공공임대주택지원(융자)	공공임대(융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공공임대융자	1,331,992	897,212	897,212	426,785	408,362	△488,850	△54.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 산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544,239	1,332,039	1,332,039	1,331,992 (1,331,992)	-	47	897,212	897,212	897,212	409,087 (409,087)	-	-	408,362
· 공공임대융자	1,544,239	1,332,039	1,332,039	1,331,992 (1,331,992)	-	47	897,212	897,212	897,212	409,087 (409,087)	-	-	408,362
○ 비목별 분류(계)	1,544,239	1,332,039	1,332,039	1,331,992 (1,331,992)	-	47	897,212	897,212	897,212	409,087 (409,087)	-	-	408,362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1,544,239	1,332,039	1,332,039	1,331,992 (1,331,992)	-	47	897,212	897,212	897,212	409,087 (409,087)	-	-	408,36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무주택 서민의 점진적 자가소유 촉진을 위한 5,10년·분납임대 및 월임대료 부담이 없는 장기전세형 주택을 공급하여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기회 부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제1항

② 추진경위

- '98.10 국민임대주택 5만호 건설계획 수립
- '03.09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 발표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 '08.09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발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국민임대 40만호) 건설)
- '13.0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공공주택 연 13만호(국민임대 3.8만호 등 임대11만호, 분양2만호) 공급)
*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포함('13~'17년 까지 승인기준 20만호)
- '13.12 4.1, 8.2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
* ('13~'17년간) 행복주택 20 → 14만호, 국민임대 등 6 → 11만호, 민간임대 5 → 6만호
- '17.11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공공건설임대주택 연평균 7.0만호 공급)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81~계속
- 사업규모 : '21년 0.5만호 공급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무주택 서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민간사업자, 리츠	호당 55~75백만원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사 업 명						
(14) 집주인임대주택사업 (1333-4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57	26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402
명칭	임대주택지원(융자)	공공임대주택지원(융자)	집주임대주택사업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집주인임대주택사업	241,258	250,000	250,000	220,000	220,000	△ 30,000	△ 12.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50,000	250,000	241,258 [241,258]	-	8,742	250,000	250,000	247,000	81,340 [81,340]	-	50,000	220,000
· 집주인임대주택사업	250,000	250,000	241,258 [241,258]	-	8,742	250,000	250,000	247,000	81,340 [81,340]	-	50,000	220,000
○ 비목별 분류(합계)	250,000	250,000	241,258 [241,258]	-	8,742	250,000	250,000	247,000	81,340 [81,340]	-	50,000	220,000
· 기타 민간 융자금 (450-04)	250,000	250,000	241,258 [241,258]	-	8,742	250,000	250,000	247,000	81,340 [81,340]	-	50,000	22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되 민간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마목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

마.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 ② 추진경위

- '17.11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수립

▶ 제19대 대통령 정책 공약(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 내 집 없는 서민들이 싸게, 안심하고 거주하는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호씩 공급
- 10조원대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로 노후주택 지원 및 생활여건을 개선

- '19. 4 :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구조 개편(건설개량형, 매입형, 융자형을 융자형으로 통합)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8년~계속
- 사업규모 : '18 ~ '22년까지 공공지원임대주택 2.5만호 공급(연간 5,000호)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은행에 위탁)
- 사업 수혜자 : 주택소유자,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	금리 1.5	주택도시기금법제9조제1항 제1호나목 및 마목

사 업 명						
(15) 민간임대(융자) (1333-4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404
명칭	임대주택지원(융자)	공공임대주택지원(융자)	민간임대(융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민간임대융자	1,870,827	1,907,640	1,657,640	1,714,750	1,714,750	57,110	3.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산
	계획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452,512	1,871,212	1,871,212	1,870,827	-	385	1,907,640	1,657,640	1,657,640	1,487,606 (1,487,606)	-	-	1,714,750
· 공공지원민간임대	1,306,032	1,254,917	1,254,917	1,254,532	-	385	1,780,324	1,530,324	1,530,324	752,537 (752,537)	-	-	1,593,790
· 장기임대 등	146,480	616,296	616,296	616,296	-	-	127,316	127,316	127,316	735,069 (735,069)	-	-	120,960
○ 비목별 분류(계)	1,452,512	1,871,212	1,871,212	1,870,827	-	385	1,907,640	1,657,640	1,657,640	1,487,606 (1,487,606)	-	-	1,714,750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1,452,512	1,871,212	1,871,212	1,870,827	-	385	1,907,640	1,657,640	1,657,640	1,487,606 (1,487,606)	-	-	1,714,7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지원민간임대) 등 내역사업은 주거지원계층 및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임
- (장기임대 등) 등 내역사업은 주거지원계층 및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건설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② 추진경위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 발표('15.1.13)
 - * 민간임대리츠 1만호 공급계획 발표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16.4.28)
 - * '17년까지 뉴스테이 15만호 부지확보
- 주거복지로드맵 발표('17.11.29)
 - * 공공지원민간임대 연평균 3.3만호 공급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18.7.17. 시행)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6~계속
- 사업규모 : '21년 공공지원민간임대 3.3만호 부지확보, 장기임대 등 0.33만호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민간임대사업자
- 사업 수혜자 : (공공지원민간임대) 무주택 임차가구 및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장기임대 등) 서민·중산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민간임대사업자	호당 평균 91백만원	주택도시보증법 제9조제1항제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사 업 명						
(16) 행복주택(융자) (1335-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5	401
명칭	임대주택지원(융자)	행복주택(융자)	행복주택(융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40%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행복주택융자	1,144,590	1,671,273	1,671,273	2,113,083	2,113,083	441,810	26.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 산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326,850	1,145,785	1,145,785	1,144,590 (1,144,590)	-	1,195	1,671,273	1,671,273	1,671,273	1,015,158 (1,015,158)	-	-	2,113,083
· 행복주택융자	1,326,850	1,145,785	1,145,785	1,144,590 (1,144,590)	-	1,195	1,671,273	1,671,273	1,671,273	1,015,158 (1,015,158)	-	-	2,113,083
○ 비목별 분류(계)	1,326,850	1,145,785	1,145,785	1,144,590 (1,144,590)	-	1,195	1,671,273	1,671,273	1,671,273	1,015,158 (1,015,158)	-	-	2,113,083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1,326,850	1,145,785	1,145,785	1,144,590 (1,144,590)	-	1,195	1,671,273	1,671,273	1,671,273	1,015,158 (1,015,158)	-	-	2,113,08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의 행복주거 실현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을 공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보증법 제9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② 추진경위

- '13.0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공공주택 연 13만호(국민임대 3.8만호 등 임대11만호, 분양2만호) 공급)
*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포함('13~'17년 까지 승인기준 20만호)
- '13.12 4.1, 8.2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
* ('13~'17년간) 행복주택 20 → 14만호, 국민임대 등 6 → 11만호, 민간임대 5→ 6만호
- '16.04 4.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
* '17년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1만호 확대하여 전체공급 물량을 14만호 → 15만호로 확대
- '17.11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공공건설임대주택 연평균 7.0만호 공급)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3~계속
- 사업규모 : '21년 3.6만호 공급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 고령자 및 주거취약계층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40%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사 업 명						
(17) 다가구매입임대(용자) (1336-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6	401
명칭	임대주택지원(용자)	다가구매입임대(용자)	다가구매입임대(용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45~50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확정(B)	(B-A)	(B-A)/A
다가구매입임대	2,421,064	2,087,000	2,242,000	3,131,000	3,281,000	1,039,000	46.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 산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593,000	2,430,465	2,430,465	2,421,064 (2,421,064)	-	9,401	2,087,000	2,242,000	2,242,000	2,141,280 (2,141,280)	-	-	3,281,000
· 다가구매입임대	1,593,000	2,430,465	2,430,465	2,421,064 (2,421,064)	-	9,401	2,087,000	2,242,000	2,242,000	2,141,280 (2,141,280)	-	-	3,281,000
○ 비목별 분류(계)	1,593,000	2,430,465	2,430,465	2,421,064 (2,421,064)	-	9,401	2,087,000	2,242,000	2,242,000	2,141,280 (2,141,280)	-	-	3,281,000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1,593,000	2,430,465	2,430,465	2,421,064 (2,421,064)	-	9,401	2,087,000	2,242,000	2,242,000	2,141,280 (2,141,280)	-	-	3,281,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시켜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제43조

② 추진경위

- '04. 2 저소득서민층 주거복지 확대방안 발표
 -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최저소득계층에 저렴하게 임대
- '05. 4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발표
 - 다가구주택 등 매입·공급 확대 : 10,000호 → 50,000호
(연간 4,500호, '15년까지 총 50,000호)
 - 정부지원 확대(재정 45%, 기금 40%)
- '06. 8 부동산정책회의에서 다가구 물량확대
 - 다가구 5만호(연간 6,500호)
- '08. 5 '08년 주택종합계획
 - 기존주택 매입임대 : '08~'12년까지 매년 7,000호씩 공급
- '10. 9 「8·15 경축사 후속조치」
 -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속 공급 ('연 2만호 수준)
- '11. 1 「1·13 전월세가격 안정화방안」 추진과제
- '12. 5 '12년 주택종합계획
 - 보금자리주택공급시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2만호 공급
- '13. 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 '17년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4만호 공급

- '14. 10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 '15년 매입·전세임대주택 1만호 추가공급('15년 5만호 공급)
- '15. 9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대책
 - '16년 리모델링 매입임대 2천호(기존물량전환 1천호, 순증 1천호) 공급
- '17.11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 '18~'22년간 매입형 14.8만호 공급
- '18. 7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기숙사형, 아이돌봄시설 신규 도입 등
- '19. 10 : 아동 주거권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발표
 -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 '20. 11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공공 전세 주택 신규 도입 및 신축형 매입임대주택 등 단기 임대주택공급 확대 등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4~계속
- 사업규모 : '20년 3.7만호 공급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기초생활수급자, 쪽방 거주자 등 도심 내 저소득계층 및 주거취약 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45~50	'05. 4. 27.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사 업 명
(18) 전세임대(융자) (1337-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7	401
명칭	임대주택지원(융자)	전세임대주택지원(융자)	전세임대(융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80~100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전세임대융자	4,225,271	3,873,250	4,659,250	4,366,250	4,366,250	△293,000	△6.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 산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2,907,250	4,229,742	4,229,742	4,225,271 (4,225,271)	-	4,471	3,873,250	4,659,250	4,659,250	3,490,633 (3,490,633)	-	-	4,366,250
· 전세임대	2,907,250	4,229,742	4,229,742	4,225,271 (4,225,271)	-	4,471	3,873,250	4,659,250	4,659,250	3,490,633 (3,490,633)	-	-	4,366,250
○ 비목별 분류(계)	2,907,250	4,229,742	4,229,742	4,225,271 (4,225,271)	-	4,471	3,873,250	4,659,250	4,659,250	3,490,633 (3,490,633)	-	-	4,366,250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2,907,250	4,229,742	4,229,742	4,225,271 (4,225,271)	-	4,471	3,873,250	4,659,250	4,659,250	3,490,633 (3,490,633)	-	-	4,366,2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 제45조

② 추진경위

- '04. 9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지원제도 도입·시행
- '05. 4 :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발표
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 도입
- '06. 8 : 부동산정책회의에서 전세임대 물량확대
전세임대 40,300호(연간 5,800호)
- '08. 5 : '08년 주택종합계획
기존주택 전세임대 : '08~'12년까지 총 46,800호 공급
- '10. 9 : 「8·15 경축사 후속조치」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속 공급
(‘10년~’12년까지 연 2만호 수준으로 공급)
- '11. 1 : 「1·13 전월세가격 안정화방안」 추진과제
- '12. 5 : '12년 주택종합계획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2만호 공급
- '13. 4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17년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4만호 공급
- '14. 10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15년 매입·전세임대주택 1만호 추가공급('15년 5만호 공급)
- '15. 9 :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대책
'16년 전세임대주택 물량확대 공급(고령층 신설 2천호, 대학생 확대 2천호)
(‘16년 2.7만호 → 3.1만호)
- '16. 4 : 전세임대 1만호 확대(3.1만 → 4.1만호) 및 지원단가 호당 500만원 상향 발표

- '17. 4 : 전세임대 7천호 확대 공급(2.7만 → 3.4만호)
- '17. 11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18~'22년간 임차형 17만호 공급
- '18. 7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기숙사형 신규 도입 등
- '19. 10 : 아동 주거권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발표
다자녀 전세임대 신규 도입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5~계속
- 사업규모 : '21년 4.1만호 공급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2순위)도시근로자 전국평균 소득 50% 이하, 장애인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용자 80~10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및 제45조의2(기존주택의 임차)

사 업 명						
(19) 통합공공임대(융자) (1338-4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8	406
명칭	임대주택지원(융자)	통합공공임대지원융자	통합공공임대(융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3~41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확정(B)	(B-A)	(B-A)/A
통합공공임대	-	-	-	87,374	92,904	92,904	신규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 산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	-	-	-	-	-	-	-	-	-	-	-	92,904
· 통합공공임대	-	-	-	-	-	-	-	-	-	-	-	-	92,904
○ 비목별 분류(계)	-	-	-	-	-	-	-	-	-	-	-	-	92,904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	-	-	-	-	-	-	-	-	-	-	-	92,90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입주자격·임대료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관점에서 개선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주거환경 조성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시기금법 제9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② 추진경위

- '20. 3 : 주거복지 혜택 확대 등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21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모델 적용
- '20. 11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중형주택(전용 60~85㎡) 신규 도입 등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1년~계속
- 사업규모 : 0.5만호 사업승인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무주택 저소득계층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33~41%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사 업 명						
(20) 다가구매입임대출자 (1440-4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40	402
명칭	임대주택지원(출자)	임대주택지원	다가구매입임대출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0~50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확정(B)	(B-A)	(B-A)/A
다가구매입임대	1,866,434	1,710,300	1,849,800	2,605,900	3,127,900	1,278,100	69.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말)						2021 예 산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354,700	1,866,475	1,866,475	1,866,434 (1,866,434)	-	41	1,710,300	1,849,800	1,849,800	1,738,577 (1,738,577)	-	-	3,127,900
·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1,354,700	1,866,475	1,866,475	1,866,434 (1,866,434)	-	41	1,710,300	1,849,800	1,849,800	1,738,577 (1,738,577)	-	-	3,127,900
○ 비목별 분류(계)	1,354,700	1,866,475	1,866,475	1,866,434 (1,866,434)	-	41	1,710,300	1,849,800	1,849,800	1,738,577 (1,738,577)	-	-	3,127,900
· 자치단체 자본 보조(330-03)	270,940	383,990	383,990	383,949 (383,949)	-	41	342,060	664,979	664,979	634,676 (634,676)	-	-	938,370
· 일 반 출 자 금 (460-01)	1,083,760	1,482,485	1,482,485	1,482,485 (1,482,485)	-	-	1,368,240	1,184,821	1,184,821	1,103,901 (1,103,901)	-	-	2,189,5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시켜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제43조

② 추진경위

- '04. 2 저소득서민층 주거복지 확대방안 발표
 -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최저소득계층에 저렴하게 임대
- '05. 4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발표
 - 다가구주택 등 매입·공급 확대 : 10,000호 → 50,000호
(연간 4,500호, '15년까지 총 50,000호)
 - 정부지원 확대(재정 45%, 기금 40%)
- '06. 8 부동산정책회의에서 다가구 물량확대
 - 다가구 5만호(연간 6,500호)
- '08. 5 '08년 주택종합계획
 - 기존주택 매입임대 : '08~'12년까지 매년 7,000호씩 공급
- '10. 9 「8·15 경축사 후속조치」
 -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속 공급 ('연 2만호 수준)
- '11. 1 「1·13 전월세가격 안정화방안」 추진과제
- '12. 5 '12년 주택종합계획
 - 보금자리주택공급시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2만호 공급
- '13. 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 '17년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4만호 공급
- '14. 10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 '15년 매입·전세임대주택 1만호 추가공급('15년 5만호 공급)
- '15. 9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대책
 - '16년 리모델링 매입임대 2천호(기존물량전환 1천호, 순증 1천호) 공급
- '17.11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 '18~'22년간 매입형 14.8만호 공급
- '18. 7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기숙사형, 아이돌봄시설 신규 도입 등
- '19. 10 : 아동 주거권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발표
 -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 '20. 11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공공 전세 주택 신규 도입 및 신축형 매입임대주택 등 단기 임대주택공급 확대 등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4~계속
- 사업규모 : '20년 3.7만호 공급
- 사업시행방법 : 출자,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기초생활수급자, 쪽방 거주자 등 도심 내 저소득계층 및 주거취약 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30~50	'05. 4. 27.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사 업 명						
(21) 전세임대경상보조 (1440-4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40	403
명칭	임대주택지원(출자)	임대주택지원	전세임대경상보조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전세임대경상보조	94,595	126,915	126,915	102,725	102,725	△ 24,190	△ 19.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 산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75,677	94,595	94,595	94,595 (94,595)	-	-	126,915	126,915	126,915	123,166 (123,166)	-	-	102,725
· 전세임대경상 보조	75,677	94,595	94,595	94,595 (94,595)	-	-	126,915	126,915	126,915	123,166 (123,166)	-	-	102,725
○ 비목별 분류(계)	75,677	94,595	94,595	94,595 (94,595)	-	-	126,915	126,915	126,915	123,166 (123,166)	-	-	102,725
· 민간경상보조 (320-01)	66,081	81,763	81,763	81,763 (81,763)	-	-	114,015	111,193	111,193	108,720 (108,720)	-	-	71,907
· 자치단체경상 보조(330-03)	9,596	12,832	12,832	12,832 (12,832)	-	-	12,900	15,722	15,722	14,447 (14,447)	-	-	30,81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가능토록 사업시행자(LH 및 지자체)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사업의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보증보험료, 화재보험료, 도배·장판 비용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및 제45조의2

② 추진경위

- '04. 9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지원제도 도입·시행
- '05. 4 :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발표
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 도입
- '06. 8 : 부동산정책회의에서 전세임대 물량확대
전세임대 40,300호(연간 5,800호)
- '08. 5 : '08년 주택종합계획
기존주택 전세임대 : '08~'12년까지 총 46,800호 공급
- '10. 9 : 「8·15 경축사 후속조치」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속 공급
('10년~'12년까지 연 2만호 수준으로 공급)
- '11. 1 : 「1·13 전월세가격 안정화방안」 추진과제
- '12. 5 : '12년 주택종합계획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2만호 공급
- '13. 4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17년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4만호 공급
- '14. 10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15년 매입·전세임대주택 1만호 추가공급('15년 5만호 공급)
- '15. 9 :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대책
'16년 전세임대주택 물량확대 공급(고령층 신설 2천호, 대학생 확대 2천호)
('16년 2.7만호 → 3.1만호)

- '16. 4 : 전세임대 1만호 확대(3.1만 → 4.1만호) 및 지원단가 호당 500만원 상향 발표
- '17. 4 : 전세임대 7천호 확대 공급(2.7만 → 3.4만호)
- '17. 11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18~'22년간 임차형 17만호 공급
- '18. 7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기숙사형 신규 도입 등
- '19. 10 : 아동 주거권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발표
다자녀 전세임대 신규 도입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5~계속
- 사업규모 : '21년 4.1만호 공급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수급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장애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10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및 제45조의2(기존주택의 임차)

사 업 명						
(22) 국민임대출자 (1440-4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40	404
명칭	임대주택지원(출자)	임대주택지원	국민임대출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20~50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국민임대출자	348,720	568,147	568,147	345,175	345,175	△222,972	△39.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 산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357,052	348,720	348,720	348,720 (348,720)	-	-	568,147	568,147	568,147	303,140 (303,140)	-	-	345,175
· 국민임대출자	357,052	348,720	348,720	348,720 (348,720)	-	-	568,147	568,147	568,147	303,140 (303,140)	-	-	345,175
○ 비목별 분류(계)	357,052	348,720	348,720	348,720 (348,720)	-	-	568,147	568,147	568,147	303,140 (303,140)	-	-	345,175
· 자치단체 자본 보조(330-03)	65,703	120,308	120,308	120,308 (120,308)	-	-	114,683	114,683	114,683	85,533 (85,533)	-	-	170,862
· 일 반 출 자 금 (460-01)	291,349	228,412	228,412	228,412 (228,412)	-	-	453,464	453,464	453,464	217,607 (217,607)	-	-	174,31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제1항

② 추진경위

- '98.10 국민임대주택 5만호 건설계획 수립
- '03.09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 발표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 '08.09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발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국민임대 40만호) 건설)
- '13.0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공공주택 연 13만호(국민임대 3.8만호 등 임대11만호, 분양2만호) 공급)
*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포함('13~'17년 까지 승인기준 20만호)
- '13.12 4.1, 8.2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
* ('13~'17년간) 행복주택 20 → 14만호, 국민임대 등 6 → 11만호, 민간임대 5 → 6만호
- '17.11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공공건설임대주택 연평균 7.0만호 공급)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8~계속
- 사업규모 : '21년 2.2만호 공급
- 사업시행방법 : 출자 및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소득 4분위 이하의 무주택 저소득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20~50%	공공주택특별법 제3조의2

사 업 명						
(23) 영구임대출자 (1440-4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40	407
명칭	임대주택지원(출자)	임대주택지원	영구임대출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85%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영구임대출자	281,192	363,476	363,476	405,201	405,201	41,725	11.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 산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276,788	281,213	281,213	281,192 (281,192)	-	21	363,476	363,476	363,476	225,291 (225,291)	-	-	405,201
· 영구임대출자	276,788	281,213	281,213	281,192 (281,192)	-	21	363,476	363,476	363,476	225,291 (225,291)	-	-	405,201
○ 비목별 분류(계)	276,788	281,213	281,213	281,192 (281,192)	-	21	363,476	363,476	363,476	225,291 (225,291)	-	-	405,201
· 자치단체 자본 보조(330-03)	35,743	57,668	57,668	57,667 (57,667)	-	1	44,170	57,103	57,103	56,942 (56,942)	-	-	99,141
· 일 반 출 자 금 (460-01)	241,045	223,545	223,545	223,525 (223,525)	-	20	319,306	306,373	306,373	168,349 (168,349)	-	-	306,0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제1항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8.10 국민임대주택 5만호 건설계획 수립
- '03.09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 발표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 '08.09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발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국민임대 40만호) 건설)
- '13.0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공공주택 연 13만호(국민임대 3.8만호 등 임대11만호, 분양2만호) 공급)
*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포함('13~'17년 까지 승인기준 20만호)
- '13.12 4.1, 8.2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
* ('13~'17년간) 행복주택 20 → 14만호, 국민임대 등 6 → 11만호, 민간임대 5 → 6만호
- '17.11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공공건설임대주택 연평균 7.0만호 공급)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89~계속
- 사업규모 : '21년 0.8만호 공급
- 사업시행방법 : 출자 및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의 최저소득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85%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사 업 명
(24) 행복주택출자 (1440-4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40	408
명칭	임대주택지원(출자)	임대주택지원	행복주택출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0%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행복주택출자	964,751	1,208,177	1,208,177	1,438,381	1,438,381	230,204	19.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 산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995,137	966,107	966,107	964,751 (964,751)	-	1,356	1,208,177	1,208,177	1,208,177	608,414 (608,414)	-	-	1,438,381
· 행복주택출자	995,137	966,107	966,107	964,751 (964,751)	-	1,356	1,208,177	1,208,177	1,208,177	608,414 (608,414)	-	-	1,438,381
○ 비목별 분류(계)	995,137	966,107	966,107	964,751 (964,751)	-	1,356	1,208,177	1,208,177	1,208,177	608,414 (608,414)	-	-	1,438,381
· 민간자본보조 (320-07)	-	-	-	-	-	-	3,702	3,702	3,702	3,701 (3,701)	-	-	-
· 자치단체자본 보조(330-03)	266,953	268,120	268,120	266,788 (266,788)	-	1,332	331,723	331,723	331,723	140,659 (140,659)	-	-	308,470
· 일 반 출 자 금 (460-01)	728,184	697,987	697,987	697,962 (697,962)	-	25	872,752	872,752	872,752	464,055 (464,055)	-	-	1,129,9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의 행복주거 실현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을 공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② 추진경위

- '13.0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공공주택 연 13만호(국민임대 3.8만호 등 임대11만호, 분양2만호) 공급)
*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포함('13~'17년 까지 승인기준 20만호)
- '13.12 4.1, 8.2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
* ('13~'17년간) 행복주택 20 → 14만호, 국민임대 등 6 → 11만호, 민간임대 5→ 6만호
- '16.04 4.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
* '17년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1만호 확대하여 전체공급 물량을 14만호 → 15만호로 확대
- '17.11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공공건설임대주택 연평균 7.0만호 공급)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3~계속
- 사업규모 : '21년 3.6만호 공급
- 사업시행방법 : 출자 및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 고령자 및 주거취약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30%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사 업 명						
(25) 임대주택리츠출자 (1440-4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40	409
명칭	임대주택지원(출자)	임대주택지원	임대주택리츠출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임대주택 리츠출자	366,612	550,120	570,120	453,207	453,207	△116,913	△20.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 산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311,180	414,705	414,705	366,612 (366,612)	-	48,093	550,120	570,120	570,120	293,969 (293,969)	-	-	453,207
· 공공임대리츠	231,180	111,180	85,940	42,600 (42,600)	-	43,340	84,840	84,840	84,840	-	-	-	-
· 민간임대리츠	1,080,000	331,525	328,765	324,012 (324,012)	-	4,753	465,280	485,280	485,280	293,969 (293,969)	-	-	453,207
○ 비목별 분류(계)	1,311,180	414,705	414,705	366,612 (366,612)	-	48,093	550,120	570,120	570,120	293,969 (293,969)	-	-	453,207
· 일 반 출 자 금 (460-01)	1,311,180	414,705	414,705	366,612 (366,612)	-	48,093	550,120	570,120	570,120	293,969 (293,969)	-	-	453,20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간과 공공이 출자한 리츠를 활용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형을 마련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 (공공임대리츠-건설형) 부채누적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LH 10년 공공임대 등에 대해 리츠 방식으로 공급확대 도모
 - (공공임대리츠-매입형) 신혼부부(청년), 무주택세대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 리츠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고정적인 임대료로 임대주택 공급
 - (민간임대리츠)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거나 토지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 등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금융법 제9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공공임대리츠>

- 추진방안 발표(경제혁신 3개년 계획,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 '14.2.26)
- 주택기금의 리츠 출자근거 마련(주택법개정, '14.5.21)
- '14년 임대주택 리츠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14.6.17)
- 임대주택 리츠 업무 전담기관(대주보) 위수탁 계약 체결('14.6.30)
- 공공임대리츠 공급규모 5만호→6만호 확대(서민주거비부담 완화방안, '14.10.30)

<민간임대리츠>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 발표('15.1.13)
 - * 민간임대리츠 1만호 공급계획 발표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16.4.28)
 - * '17년까지 뉴스테이 15만호 부지확보
- 주거복지로드맵 발표('17.11.29)
 - * 공공지원민간임대 연평균 3.3만호 공급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18.7.17. 시행)

* 민간임대주택 체계 개편 및 공공성 강화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공공임대리츠('14~계속), 민간임대리츠('15~계속)
- 사업규모 : '21년 민간임대리츠 3.3만호 부지확보
- 사업시행방법 : 출자
- 사업시행주체 : 민간사업자(부동산투자회사)
- 사업 수혜자 : 무주택 임차가구,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부동산투자회사	10%	주택도시보증법 제9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사 업 명						
(26) 통합공공임대출자 (1440-4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40	411
명칭	임대주택지원(출자)	임대주택지원	통합공공임대출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3~39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확정(B)	(B-A)	(B-A)/A
통합공공임대	-	-	-	83,112	88,438	88,438	신규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 산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	-	-	-	-	-	-	-	-	-	-	-	-	88,438
· 통합공공임대	-	-	-	-	-	-	-	-	-	-	-	-	-	88,438
○ 비목별 분류(계)	-	-	-	-	-	-	-	-	-	-	-	-	-	88,438
· 일 반 출 자 금 (460-01)	-	-	-	-	-	-	-	-	-	-	-	-	-	88,43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입주자격·임대료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관점에서 개선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주거환경 조성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② 추진경위

- '20. 3 : 주거복지 혜택 확대 등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21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모델 적용
- '20. 11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중형주택(전용 60~85㎡) 신규 도입 등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1년~계속
- 사업규모 : 0.5만호 사업승인
- 사업시행방법 : 출자 및 보조('22~)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무주택 저소득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33~39%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사 업 명						
(27)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1440-4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40	412
명칭	임대주택지원(출자)	임대주택지원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60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확정(B)	(B-A)	(B-A)/A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	-	35,950	354,535	364,535	328,585	914.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 산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	-	-	-	-	-	-	35,950	35,950	35,950	-	-	- 364,535
· 단일세대	-	-	-	-	-	-	-	2,600	2,600	2,600	-	-	- 272,600
· 세대통합	-	-	-	-	-	-	-	3,350	3,350	3,350	-	-	- 5,075
· 영구임대 시설 개선	-	-	-	-	-	-	-	-	-	-	-	-	- 50,500
· 매입임대 시설 개선	-	-	-	-	-	-	-	30,000	30,000	30,000	-	-	- 36,360
○ 비목별 분류(계)	-	-	-	-	-	-	-	35,950	35,950	35,950	-	-	- 364,535
· 자치단체 자본 보조(330-03)	-	-	-	-	-	-	-	-	-	-	-	-	- 48,613
· 일 반 출 자 금 (460-01)	-	-	-	-	-	-	-	35,950	35,950	35,950	-	-	- 315,92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단일세대) 전용부분, 공용부분에 에너지절감공사와 친환경자재를 활용한 시공
- (세대통합) 공가비율이 높은 26㎡(전용)이하 연접한 소형평형 2호를 1호로 통합(52㎡)하고 에너지 절감공사를 시행
- (영구임대 시설개선) 노후 영구임대 및 50년 임대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결로·소음방지 성능등급 준수 등과 관련된 시설 개보수
- (매입임대 시설개선) 취약계층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세대 전용·공용 부위 패시브·액티브 에너지시설보강 및 입주민체감형 시설개선공사 실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시기금법 제9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

② 추진경위

- '20. 3 : 주거복지 혜택 확대 등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계속
- 사업규모 : '21년 8.2만호 그린리모델링·시설개선
- 사업시행방법 : 출자,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노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50~6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사 업 명
(28) 사학진흥기금 예탁 (9002-9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2	900
명칭	기금간거래(예탁금)	사학진흥기금예탁 (주택도시기금)	예탁금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확정(B)	(B-A)	(B-A)/A
공공기금예탁금 (480-03)	49,512	52,885	52,885	107,350	107,350	54,465	103.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49,512	49,512	49,512	49,512	-	-	52,885	52,885	52,885	-	-	-	107,350
· 사학기금으로의 예탁금	49,512	49,512	49,512	49,512	-	-	52,885	52,885	52,885	-	-	-	107,350
○ 비목별 분류(계)	49,512	49,512	49,512	49,512	-	-	52,885	52,885	52,885	-	-	-	107,350
· 기금예탁금 (480-03)	49,512	49,512	49,512	49,512	-	-	52,885	52,885	52,885	-	-	-	107,3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사립·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에서 사학진흥기금에 위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6조제1항제2호

제6조(자금의 기금 위탁) ①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기금 또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위탁할 수 있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6조(차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1.12.7 : 서민주거안정 대책(12.7대책) 발표

- '12. 4. : 물가관계장관회의(사립대학교 공공기숙사 지원)

- '12. 7. : 물가관계장관회의(대학연합기숙사 지원)

- '13.12. : 물가관계차관회의(공공기숙사 지원을 용자→예탁방식으로 변경)

- '17. 8 : 새정부 국정과제 확정·발표

※ 국정과제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기숙사확대(5만명))

- '18. 1 :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인하(2.0%→1.5%)

- '18. 7 : “함께 나누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이야기” 개최

※ (VIP) '19년~22년까지 기숙사형 청년주택 1만명(5천호) 추가 공급 발표

- '19. 1 : 기숙사형 청년주택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3 ~ 계속
- 사업규모 : '20년 기준 528억원
- 사업시행방법 : 위탁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사학진흥재단
- 사업 수혜자

- 융자대상자 :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 학교 및 기숙사특수목적법인(SPC)
 - 정책수혜자 : 대학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사학진흥재단	연 1.5%+가산금리 3년거치 27년 상환	-

사 업 명						
(29)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9003-9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3	910
명칭	기금간거래(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예탁금	8,430,000	10,215,000	11,461,305	8,000,000	8,000,000	△3,461,305	△30.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8,430,000	8,430,000	8,430,000	8,430,000	-	-	10,215,000	11,461,305	11,461,305	8,646,305	-	-	8,000,000
· 공공자금관리 기금(총괄계정) 예탁금	8,430,000	8,430,000	8,430,000	8,430,000	-	-	10,215,000	11,461,305	11,461,305	8,646,305	-	-	8,000,000
○ 예탁금	8,430,000	8,430,000	8,430,000	8,430,000	-	-	10,215,000	11,461,305	11,461,305	8,646,305	-	-	8,000,000
· 기금예탁금 (480-03)	8,430,000	8,430,000	8,430,000	8,430,000	-	-	10,215,000	11,461,305	11,461,305	8,646,305	-	-	8,00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정부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4~계속
- 사업시행방법 : 예탁
- 사업시행주체 : 직접 수행

사 업 명						
(30)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계정) 예수원금상환(9110-9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100	9110	911
명칭	기금간거래 (예수원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원금상환(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계정) 예수원금상환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상환지출	30,498	12,205	12,205	8,079	8,079	△4,126	△33.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원금상환 (주택도시기금)	30,498	30,498	30,498	30,498	-	-	12,205	12,205	12,205	9,154	-	-	8,079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예수원금상환	30,498	30,498	30,498	30,498	-	-	12,205	12,205	12,205	9,154	-	-	8,079
○ 상환지출	30,498	30,498	30,498	30,498	-	-	12,205	12,205	12,205	9,154	-	-	8,079
· 예수금원금상환 (510-04)	30,498	30,498	30,498	30,498	-	-	12,205	12,205	12,205	9,154	-	-	8,07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과거 주택도시기금이 재정융자 특별회계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원금상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예수
- 사업시행주체 : 직접 수행

사 업 명						
(31) 공무원연금기금 예수원금상환(9130-9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100	9130	910
명칭	기금간거래 (예수원금상환)	기타기금예수원금상환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의 원금상환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상환지출	-	-	-	10,000	10,000	10,000	순증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말)						2021 예 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	-	-	-	-	-	-	-	-	-	-	-	10,000
· 공무원연금기금 으로의 원금 상환	-	-	-	-	-	-	-	-	-	-	-	-	10,000
○ 비목별 분류(계)	-	-	-	-	-	-	-	-	-	-	-	-	10,000
· 예수금원금상 환(510-04)	-	-	-	-	-	-	-	-	-	-	-	-	1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과거 주택도시기금이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원금상환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의해 외부로부터 차입한 예수금의 원금 상환

사 업 명						
(32)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계정) 예수이자상환(9201-92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200	9201	921
명칭	기금간거래 (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 이자상환(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계정) 예수이자상환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 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상환지출	678	939	939	559	559	△380	△40.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8월말)						2021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주택도시기금)	1,165	1,165	1,165	678	-	487	939	939	939	177	-	-	559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예수이자상환	1,165	1,165	1,165	678	-	487	939	939	939	177	-	-	559
○ 상환지출	1,165	1,165	1,165	678	-	487	939	939	939	177	-	-	559
· 예수금이자 (510-05)	1,165	1,165	1,165	678	-	487	939	939	939	177	-	-	55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과거 주택도시기금이 재정융자 특별회계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상환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예수
- 사업시행주체 : 직접 수행

사 업 명						
(33) 공무원연금기금 예수이자상환(9220-92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200	9220	920
명칭	기금간거래 (예수이자상환)	기타기금예수이자상환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의 이자상환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상환지출	-	-	-	453	453	453	순증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산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집행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집행액]	이 월 예 상 액	불 용 예 상 액	
	당 초	수 정					당 초	수 정					
○ 기능별 분류(계)	-	-	-	-	-	-	-	-	-	-	-	-	453
· 공무원연금기 금으로의 원 금상환	-	-	-	-	-	-	-	-	-	-	-	-	453
○ 비목별 분류(계)	-	-	-	-	-	-	-	-	-	-	-	-	453
· 예수금이자상 환(510-05)	-	-	-	-	-	-	-	-	-	-	-	-	45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과거 주택도시기금이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상환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의해 외부로부터 차입한 예수금의 이자 상환

사 업 명						
(34) 도시계정 전출(9310-99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300	9310	999
명칭	계정간거래 (전출금)	주택계정에서도도시계정으로의 전출금	도시계정 전출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전출금등	587,423	507,449	457,223	902,221	901,976	444,753	97.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말)						2021 예산 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주택계정에서 도시계정의로의 전출금	587,423	587,423	587,423	587,423	-	-	507,449	457,223	457,223	150,000	-	-	901,976
· 도시계정전출	587,423	587,423	587,423	587,423	-	-	507,449	457,223	457,223	150,000	-	-	901,976
○ 전출금등	587,423	587,423	587,423	587,423	-	-	507,449	457,223	457,223	150,000	-	-	901,976
· 계정간전출금 (610-04)	587,423	587,423	587,423	587,423	-	-	507,449	457,223	457,223	150,000	-	-	901,97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활성화 추진을 위한 주택계정에서 도시계정으로의 전출금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5호

☐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전출
- 사업시행주체 : 직접 수행

사 업 명						
(35) 통화금융기관예치금(주택) (9701-97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1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주택도시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금(주택)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881,747	2,150,000	2,150,000	-	1,000,000	△1,150,000	△53.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말)						2021 예산 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여유자금운용 (주택도시기금)	1,500,000	1,500,000	1,500,000	881,747	-	-	2,150,000	2,150,000	2,150,000	439,782	-	-	1,000,000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주택)	1,500,000	1,500,000	1,500,000	881,747	-	-	2,150,000	2,150,000	2,150,000	439,782	-	-	1,000,000
○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1,500,000	1,500,000	1,500,000	881,747	-	-	2,150,000	2,150,000	2,150,000	439,782	-	-	1,000,000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470-02)	1,500,000	1,500,000	1,500,000	881,747	-	-	2,150,000	2,150,000	2,150,000	439,782	-	-	1,00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은 조성한 자금을 용자사업, 차입금 상환 등에 운용하고 남은 잉여 자금으로 지급준비자금 성격
- 자금의 운용은 중장기 투자 전략 수립 후 투자원본의 안정성·유동성 및 수익성 제고 등을 감안하여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등으로 분산 투자하여 운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4항

☐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예치
- 사업시행주체 : 직접 수행

사 업 명
(36)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주택) (9701-97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2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주택도시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주택)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10,370,319	10,400,997	7,941,637	8,119,889	7,621,801	△319,836	△4.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말)						2021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여유자금운용 (주택도시기금)	14,213,474	10,917,469	10,917,469	10,370,319	-	-	10,400,997	7,941,637	7,941,637	27,920,000	-	-	7,621,801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주택)	14,213,474	10,917,469	10,917,469	10,370,319	-	-	10,400,997	7,941,637	7,941,637	27,920,000	-	-	7,621,801
○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14,213,474	10,917,469	10,917,469	10,370,319	-	-	10,400,997	7,941,637	7,941,637	27,920,000	-	-	7,621,801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470-03)	14,213,474	10,917,469	10,917,469	10,370,319	-	-	10,400,997	7,941,637	7,941,637	27,920,000	-	-	7,621,80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조성한 자금 중 융자사업, 차입금 상환 등에 운용하고 남은 잉여자금으로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
 - 만기 1년 이상의 중장기자금(MMF, 전담운용기관, 연기금투자풀)으로 구성
- 사업비 지출을 위한 유동성 확보와 운용 수익률 제고를 동시 달성하기 위해 단기자금과 중장기자금으로 분산 투자하여 운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4항

☐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유가증권매입
- 사업시행주체 : 직접 수행

사 업 명						
(37) 기타여유자금운용(주택) (9701-97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3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주택도시기금)	기타여유자금운용(주택)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예비비 및 기타	12,774	30,000	30,000	31,200	31,200	1,200	4.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말)						2021 예 산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여유자금운용 (주택도시기금)	30,000	30,000	30,000	12,774	-	-	30,000	30,000	30,000	10,736	-	-	31,200
· 기타여유자금 운용(주택)	30,000	30,000	30,000	12,774	-	-	30,000	30,000	30,000	10,736	-	-	31,200
○ 예비비 및 기타	30,000	30,000	30,000	12,774	-	-	30,000	30,000	30,000	10,736	-	-	31,200
· 반환금 및 손실금 (710-03)	30,000	30,000	30,000	12,774	-	-	30,000	30,000	30,000	10,736	-	-	31,2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타여유자금운용은 공탁금, 특수채권회수 위임수수료 및 관리비용 등 지출을 위한 자금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사 업 명						
(38)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 (9850-98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800	9850	980
명칭	차입금등원금상환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 (주택도시기금)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상환지출	12,171,594	15,307,500	15,307,500	15,919,800	15,919,800	612,300	4.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말)						2021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기타민간예수금 원금상환 (주택도시기금)	14,689,500	14,689,500	14,689,500	12,171,594	-	2,517,906	15,307,500	15,307,500	15,307,500	9,126,616	-	-	15,919,800
·기타민간예수금 원금상환	14,689,500	14,689,500	14,689,500	12,171,594	-	2,517,906	15,307,500	15,307,500	15,307,500	9,126,616	-	-	15,919,800
○상환지출	14,689,500	14,689,500	14,689,500	12,171,594	-	2,517,906	15,307,500	15,307,500	15,307,500	9,126,616	-	-	15,919,800
·민간예수금 원금상환 (510-08)	14,689,500	14,689,500	14,689,500	12,171,594	-	2,517,906	15,307,500	15,307,500	15,307,500	9,126,616	-	-	15,919,8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재원 마련을 위해 청약저축으로부터 유입된 자금 중 청약저축 해지에 따라 상환하는 원금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2호

구 분	이 율	기 간	내 용	법적근거
○ 청약저축	2년이상 : 1.8% 2년미만 : 1.5% 1년미만 : 1.0%	당첨시까지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저축 (입주자선정자격부여)	주택법 제75조

☐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원금상환
- 사업시행주체 : 직접 수행
- 사업 수혜자 : 청약저축 가입자

사 업 명						
(39) 국공채원금상환 (9860-98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800	9860	980
명칭	차입금등원금상환	국공채원금상환 (주택도시기금)	국공채원금상환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 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상환지출	12,259,446	16,147,600	16,147,600	15,477,600	15,477,600	△ 670,000	△ 4.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말)						2021 예 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국공채 원금상환 (주택도시기금)	12242700	12314700	12314700	12259446	-	55,254	16147600	16147600	16147600	14783998	-	-	15477600
· 국공채 원금상환	12242700	12314700	12314700	12259446	-	55,254	16147600	16147600	16147600	14783998	-	-	15477600
○ 상환지출	12242700	12314700	12314700	12259446	-	55,254	16147600	16147600	16147600	14783998	-	-	15477600
· 국내차입금상환 (510-01)	12242700	12314700	12314700	12259446	-	55,254	16147600	16147600	16147600	14783998	-	-	154776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주택채권으로부터 유입된 자금 중 채권만기 도래 등에 따라 상환하는 원금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4호

구 분	이 율	기 간	내 용
○ 제1종 국민주택채권	연 1.00%	5년	인·허가, 등기, 등록시 첨가발행
○ 제2종 국민주택채권	연 0%	10년	공공택지내의 85㎡ 초과 분양 아파트에 대해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발행

☐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원금상환
- 사업시행주체 : 직접 수행
- 사업 수혜자 : 국민주택채권 매입자

사 업 명						
(40) 도시재생사업지원(1510-99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10	992
명칭	도시재생활성화	도시재생지원	도시재생사업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도시재생사업지원	10,025	20,607	20,607	24,746	17,699	△2,908	△14.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3,305	14,281	10,025 (10,025)	3,866	390	20,607	20,607	24,473	14,357 (14,357)	-	-	17,699
· 도시재생사업지원	13,305	14,281	10,025 (10,025)	3,866	390	20,607	20,607	24,473	14,357 (14,357)	-	-	17,699
○ 비목별 분류(합계)	13,305	14,281	10,025	3,866	390	20,607	20,607	24,473	14,357	-	-	17,699
· 일반수용비(210-01)	360	360	263	-	87	388	388	388	157	-	-	388
· 임차료(210-07)	10	10	12	-	8	-	-	-	3	-	-	-
· 일반용역비(210-14)	-	887	887	-	-	-	-	-	-	-	-	-
· 여비(220-01,02)	168	168	91	-	77	160	160	160	13	-	-	160
· 사업추진비(240-01)	40	40	39	-	1	40	40	40	30	-	-	40
· 정책연구비(260-02)	400	489	240	185	64	400	400	585	315	-	-	400
·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	-	-	-	-	-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12,327	12,327	8,498	3,681	153	19,619	19,619	23,300	13,839	-	-	16,711
· 자치단체보조(330-01)	-	-	-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및 관리,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역주민·지자체 등 도시재생 교육,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 도시재생 부동산시장 동향조사,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 터 새로이 사업 지원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서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기구 지정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18.3)에 “지역 교육 강화”, “뉴딜사업 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조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 “터 새로이 사업 도입” 포함

② 추진경위

- 기존 도심 및 쇠퇴 도시지역의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13.6.4)
- '14.5월 13곳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경제기반형 2, 근린재생형 11)
- '16.4월 33곳의 **2차 도시재생 사업지역** 지정(경제기반형 5, 근린재생형 28)
 - * 2016 회계연도부터 기존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으로 예산 편성
- '17.7월 국토교통부 내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신설(5개 부서)
- '17.12월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68곳*** 선정(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16곳, 일반근린형 15곳, 중심시가지형 19곳, 경제기반형 1곳
- '18.3월 향후 5년간의 도시재생 정책방향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 '18.8월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 **99곳*** 선정(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일반근린형 34곳, 중심시가지형 17곳, 경제기반형 3곳
- '19.4월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 **22곳*** 선정(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 우리동네살리기 5곳, 주거지지원형 4곳, 일반근린형 6곳, 중심시가지형 7곳
- '19.10월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 **76곳*** 선정(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 우리동네살리기 13곳, 주거지지원형 14곳, 일반근린형 34곳, 중심시가지형 13곳, 경제기반형 2곳
- '19.12월 도시재생 '신규제도 시범사업' **18곳*** 선정(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 도시재생 인정사업 12곳, 총괄사업관리자 2곳, 혁신지구 4곳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계속
- 사업규모 : 지원기구 운영비, 지역주민 등 교육, 부동산시장조사,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 터 새로이 사업 지원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공공기관)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등
- 사업 수혜자 : 지역 주민 등

사 업 명						
(41) 도시재생지원(융자)(1510-99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10	997
명칭	도시재생활성화	도시재생지원	도시재생지원(융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총사업비의 50%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도시재생지원 (융자)	47,120	170,950	100,950	245,250	223,450	122,500	121.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 산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32,984	47,120	47120	47,120 (47,120)	-	-	170,950	100,950	100,950	50,100 (50,100)	-	-	223,450
· 도시 재 생 지 원 (융자)	132,984	47,120	47120	47,120 (47,120)	-	-	170,950	100,950	100,950	50,100 (50,100)	-	-	223,450
○ 비목별 분류(합계)	132,984	47,120	47120	47,120 (47,120)	-	-	170,950	100,950	100,950	50,100 (50,100)	-	-	223,450
· 융자금 (450-04)	132,984	47,120	47120	47,120 (47,120)	-	-	170,950	100,950	100,950	50,100 (50,100)	-	-	223,4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쇠퇴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기반 창출을 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시재생 뉴딜리츠, 민간 등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융자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② 추진경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13. 6월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14~'23) 국무회의 의결 : '13. 12월
- 13개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경제기반형 2개, 근린재생형 11개) : '14. 5월
-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시행 : '15. 7월
- 도시재생사업 일반지역 선정 : '16. 4월
- 16개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승인·변경 : '17. 9월
- 17년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선정(68곳) : '17. 12월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 '18. 3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계속
- 사업규모 : 중·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의 총사업비는 1,000~2,000억원 내외 규모이며 총사업비의 최대 50% 내에서 융자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LH 및 지자체(지방공사 포함), 민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
- 사업 수혜자 : 도시재생사업 지역주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LH 및 지자체(지방공사 포함), 민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도시재생 뉴딜리츠 등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사 업 명						
(42) 도시재생지원(출자)(1510-99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10	998
명칭	도시재생활성화	도시재생지원	도시재생지원(출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 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도시재생지원 (출자)	119,164	128,000	128,000	198,000	158,000	30,000	23.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 산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93,300	119,164	119164	119,164 [119,164]	-	-	128,000	128,000	128,000	128,000 [128,000]	-	-	158,000
· 도시재생지원 (출자)	93,300	119,164	119164	119,164 [119,164]	-	-	128,000	128,000	128,000	128,000 [128,000]	-	-	158,000
○ 비목별 분류(계)	93,300	119,164	119164	119,164 [119,164]	-	-	128,000	128,000	128,000	128,000 [128,000]	-	-	158,000
· 출자금(460-01)	93,300	119,164	119164	119,164 [119,164]	-	-	128,000	128,000	128,000	128,000 [128,000]	-	-	158,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쇠퇴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기반 창출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리츠 등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출자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② 추진경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13. 6월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14~'23) 국무회의 의결 : '13. 12월
- 13개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경제기반형 2개, 근린재생형 11개) : '14. 5월
-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시행 : '15. 7월
- 도시재생사업 일반지역 선정 : '16. 4월
- 16개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승인·변경 : '17. 9월
- 17년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선정(68곳) : '17. 12월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 '18. 3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계속
- 사업규모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통해 '18~'22 5년간 도시계정 연평균 1.1조 지원 발표('18.3)
- 사업시행방법 : 출자
- 사업시행주체 : LH 및 지자체(지방공사 포함), 민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
- 사업 수혜자 : 도시재생사업 지역주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LH 및 지자체(지방공사 포함),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뉴딜리츠 등	총사업비 20% 범위 내 (모태펀드의 경우 3차 100억 출자)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사 업 명						
(43)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1520-99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20	992
명칭	도시재생활성화	도시기능증진지원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확정(B)	(B-A)	(B-A)/A
노후산단재 생지원(융자)	23,000	50,000	50,000	40,000	40,000	△10,000	△20.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 말)						2021 예 산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집행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집행액]	이 월 예 상 액	불 용 예 상 액	
	당 초	수 정					당 초	수 정					
○ 기능별 분류(계)	50,400	50,400	50,400	23,000 [23,000]	-	27,4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	-	40,000
· 노 후 산 단 재 생 지 원 (융 자)	50,400	50,400	50,400	23,000 [23,000]	-	27,4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	-	40,000
○ 비 목 별 분 류 (계)	50,400	50,400	50,400	23,000 [23,000]	-	27,4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	-	40,000
· 기 타 민 간 융 자 금 (450-04)	50,400	50,400	50,400	23,000 [23,000]	-	27,4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	-	4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지원, 입주기업 경쟁력강화 및 일자리창출 도모
- (사업내용) 도시친화형 융·복합 산단 플랫폼 조성 및 노후산단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합개발형 및 기반시설형, 리모델링형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보증법」 제9조

② 추진경위

- 「주택도시보증법」 공포·시행 : '18.3.13 공포, 시행 9.14

*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비용을 출자·투자·융자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9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융자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복합개발형) 산단재생리츠, 지자체, LH(지방공사) 등 산단재생사업 시행자

(기반시설형) 지자체, 공공기관 등 사업 시행자

(리모델링형)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입주기업

- 사업 수혜자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및 근로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산단재생리츠, 지자체, LH(지방공사) 등 산단재생사업 시행자	총사업비의 70% (복합개발형의 경우 50%)	주택도시보증법 제9조

사 업 명						
(44) 도시재생씨앗음자(1520-99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20	994
명칭	도시재생활성화	도시기능증진지원	도시재생씨앗음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도시재생 씨앗음자	187,733	230,600	200,600	209,695	196,515	△4,085	△2.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 산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61,000	190,000	190000	187,733 (187,733)	-	2,267	230,600	200,600	200,600	119,797 (119,797)	-	-	196,515
· 도시재생 씨앗음자	61,000	190,000	190000	187,733 (187,733)	-	2,267	230,600	200,600	200,600	119,797 (119,797)	-	-	196,515
○ 비목별 분류(계)	61,000	190,000	190000	187,733 (187,733)	-	2,267	230,600	200,600	200,600	119,797 (119,797)	-	-	196,515
· 융자금(450-04)	61,000	190,000	190000	187,733 (187,733)	-	2,267	230,600	200,600	200,600	119,797 (119,797)	-	-	196,51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쇠퇴한 도시지역 내 일자리 창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업공간, 상가 리모델링과 생활SOC 조성, 신규 창업을 위한 창업시설 등 필요자금 융자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기금의 용도)
- ② 추진경위
 - '15. 1. : 「주택도시기금법」 제정
 - '15. 7.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 '17. 9. : 수요자중심형 기금 융자 상품 출시
 - '20. : '21년부터 사업명칭 변경(수요자중심형 → 도시재생씨앗융자)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업 없음
- 사업기간 : '17년 ~ 계속
- 사업규모 : 융자지원금 50억 미만(공공은 100억 미만)인 재생사업에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코워킹커뮤니티 운영사업자(개인, 법인 등), 노후 상가 소유자, 신규 창업을 하는 마을기업, 청년창업자 등 개인 또는 법인
- 사업 수혜자 : 도시재생사업 지역주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마을기업, 도시재생경제조직, 지자체, 조합, 지방공사 등 기금 지원대상 개인 및 법인	총사업비의 70% (임대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시 최대 80%)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사 업 명						
(45) 가로주택정비사업 (1520-99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기획단	도시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20	995
명칭	도시재생활성화	도시기능증진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90%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가로주택 정비사업	150,000	267,500	317,500	267,500	267,500	△ 50,000	△ 15.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 산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가로주택정비사업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	-	267,500	317,500	317,500	278,535 (278,535)	-	-	267,500
· 가로주택 정비 사업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	-	267,500	317,500	317,500	278,535 (278,535)	-	-	267,500
○ 비목별 분류(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	-	267,500	317,500	317,500	278,535 (278,535)	-	-	267,500
· 융자금(450-04)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	-	267,500	317,500	317,500	278,535 (278,535)	-	-	267,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1만㎡ 미만의 소규모로 시행하는 주택정비사업으로서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단기간에 걸친 도시재생활과의 가시화가 가능
-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노후한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소외되던 지역의 주택 개량이 가능하며, 공사비 등 기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

제9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 ② 추진경위

- 제19대 대통령 정책 공약(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 내 집 없는 서민들이 싸게, 안심하고 거주하는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호씩 공급
- 10조원대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로 노후주택 지원 및 생활여건을 개선

- '17. 7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경예산 반영(60억원) 및 기금지원 개시
- '18. 2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관 법령 이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계속
- 사업규모 : 총사업비 50~90% 이내 지원(공적임대 공급시 70%, 공공참여시 90%)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조합, 공공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거주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조합, 공공기관 등 사업시행자	총사업비의 50% 이내 *공적임대 공급시 70%, 공공참여시 20% 추가 확대 금리 1.5% *사업구역 내 빈집 포함 또는 공공참여시 1.2%	주택도시기금법제9조제2항 제1호가목

사 업 명						
(46) 자율주택정비사업 (1520-99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기획단	도시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20	996
명칭	도시재생활성화	도시기능증진지원	자율주택정비사업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90%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자율주택정비사업	13,419	70,000	70,000	70,000	50,000	△20,000	△28.6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 산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가능별 분류(합계)	100,000	31,000	31,000	13,419 (13,419)	-	17,581	70,000	70,000	70,000	28,383 (28,383)	-	-	50,000
· 자율주택정비사업	100,000	31,000	31,000	13,419 (13,419)	-	17,581	70,000	70,000	70,000	28,383 (28,383)	-	-	50,000
○ 비목별 분류(합계)	100,000	31,000	31,000	13,419 (13,419)	-	17,581	70,000	70,000	70,000	28,383 (28,383)	-	-	50,000
· 융자금(450-04)	100,000	31,000	31,000	13,419 (13,419)	-	17,581	70,000	70,000	70,000	28,383 (28,383)	-	-	5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규모가 작고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 도시재생 뉴딜 공약 효과 제고
- * 노후·불량 주택의 호수가 단독주택의 경우 10호 미만,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미만인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민 주도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

제9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용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8조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중 "바목까지의 사업"을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으로 한다.

② 추진경위

- 제19대 대통령 정책 공약(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 내 집 없는 서민들이 싸게, 안심하고 거주하는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호씩 공급
- 10조원대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로 노후주택 지원 및 생활여건을 개선

- '18. 2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관 법령 이관 및 기금지원 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8 ~ 계속
- 사업규모 : 총사업비 50~90% 이내 지원(공적임대 공급시 70%, 공공참여시 90%)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토지등소유자, 공공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저층 노후주거지역 거주 주민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토지등소유자· 공공기관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공적임대 공급시 70%, 공공참여시 20% 추가 확대 금리 1.5% *사업구역 내 빈집 포함 또는 공공참여시 1.2%	주택도시기금법제9조제1항 제1호가목

사 업 명						
(47) 위탁수수료(도시)(1530-6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2	080	088
명칭				도시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0	600
명칭	도시재생활성화	위탁관리	위탁수수료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위탁수수료 (도시계정)	3,947	4,124	3,898	4,912	4,124	226	5.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1 예 산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분류(합계)	4,684	4,684	4,684	3,947 [3,947]	-	737	4,124	3,898	3,898	3,482 [3,482]	-	-	4,124
· 위탁수수료 (도시계정)	4,684	4,684	4,684	3,947 [3,947]	-	737	4,124	3,898	3,898	3,482 [3,482]	-	-	4,124
○ 비목별 분류(계)	4,684	4,684	4,684	3,947 [3,947]	-	737	4,124	3,898	3,898	3,482 [3,482]	-	-	4,124
· 운영비 (210)	4,684	4,684	4,684	3,947 [3,947]	-	737	4,124	3,898	3,898	3,482 [3,482]	-	-	4,12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출·용자 등 업무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하므로 이에 대한 법정 위탁수수료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 ② 추진경위

- 「주택도시기금법」 제정 : '15. 1월

- 「주택도시기금법」 및 하위법령 시행 : '15. 7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 사업 수혜자 : 도시재생사업 지역주민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48) 기타경비(도시)(1540-63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2	080	088
명칭					도시	사회복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40	634
명칭	도시재생활성화	기금운영비	기타경비(도시)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기금운영비 (도시계정)	39	35	35	40	35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1월 말)						2020 예산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도시계정 기금운영비	40	40	40	39	-	-	35	35	35	13	-	-	35
· 도시계정 기타경비	40	40	40	39	-	-	35	35	35	13	-	-	35
○ 비목별 분류(계)	40	40	40	39	-	-	35	35	35	13	-	-	35
· 연구개발비 (260)	-	-	-	-	-	-	-	-	-	-	-	-	-
· 운영비 (210-01)	40	40	40	39	-	-	35	35	35	13	-	-	35
· 업무추진비 (240-01)	-	-	-	-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도시계정의 성과 평가와 도시재생정책 연구 등 수행을 위한 용역비용 등
기타 경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 ② 추진경위
 - 「주택도시기금법」 제정 : '15. 1월
 - 「주택도시기금법」 및 하위법령 시행 : '15. 7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7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 사업 수혜자 : 도시재생사업 지역주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1. 수 입

비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54 - 543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

(단위: 백만원, %)

목 명	2019년 결 산 액	2020년 계 획 액		2021년		증 감	
		당 초	수 정 (A)	조 정 안	국 회 확 정 (B)	(B-A)	(B-A)/A
비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4,516	3,504	3,504	3,210	3,210	△ 294	△ 8.4

가. 법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12

제39조의12 (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7조에 따른 분담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나. 수입 개요

- 책임보험료의 일정비율*을 징수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이 '17년도 기금으로 편입되면서 누적된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주간운용사에 위탁하는 등 자산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

* ('78년~) 2.17% → ('99년~) 4.4% → ('06년~) 3.4% → ('09년~) 1%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 초	수 정 (A)							
'17	-	-	-	-	-	-	-	-	-
'18	2,869	2,869	2,869	2,370	2,370	82.6	100.0	-	-
'19	2,875	2,875	2,875	4,516	4,516	157.1	100.0	-	-
'20	3,504	3,504	3,504	338	338	9.6	100.0	-	-
'21(안)	3,210	3,210							

기타민간이자수입
54 - 544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조정안	국회확정(B)	(B-A)	(B-A)/A
기타민간이자 수입	13	17	17	16	16	△1	△5.9

가. 법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

제13조(분담금의 관리) ② 보장사업자는 보상금을 지급한 날 및 구상금이 환입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된 보상금·이자·수수료, 구상금 환입액·이자·수수료 및 제24조에 따라 기준월에 지출된 비용의 내용을 보장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이자계산은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기준월 말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의 CD금리를 적용하되, 이자계산 기간은 보상금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구상금의 경우 구상금이 환입된 날의 다음날부터 각각 제14조에 따른 정산일까지로 한다.

나. 수입 개요

- 보장사업자가 가해자로부터 구상하여 손해보상금이 환입된 날과 기금관리자에게 납부한 날의 기간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7	-	-	-	-	-	-	-	-	-
'18	6	6	6	14	14	233.3	100.0	-	-
'19	13	13	13	13	13	100.0	100.0	-	-
'20	17	17	17	6	6	35.3	100.0	-	-
'21(안)	16	16							

기타재산수입
54 - 545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

(단위: 백만원, %)

목 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 (A)	조정안	국회확정(B)	(B-A)	(B-A)/A
기타재산수입	-	-	-	1,001	1,001	1,001	순증

가. 법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12

제39조의12 (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7조에 따른 분담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

제13조(분담금의 관리) ② 보장사업자는 보상금을 지급한 날 및 구상금이 환입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된 보상금·이자·수수료, 구상금 환입액·이자·수수료 및 제24조에 따라 기준월에 지출된 비용의 내용을 보장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이자계산은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기준월 말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의 CD금리를 적용하되, 이자계산 기간은 보상금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구상금의 경우 구상금이 환입된 날의 다음날부터 각각 제14조에 따른 정산일까지로 한다.

나. 수입 개요

- 책임보험료의 일정비율*을 징수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이 '17년도 기금으로 편입되면서 누적된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주간운용사에 위탁하는 등 자산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

* ('78년~) 2.17% → ('99년~) 4.4% → ('06년~) 3.4% → ('09년~) 1%

- 보장사업자가 가해자로부터 구상하여 손해보상금이 환입된 날과 기금관리자에게 납부한 날의 기간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7	2,875	2,875	2,875	3,409	3,409	118.6	100.0	-	-
'18	-	-	-	-	-	-	-	-	-
'19	-	-	-	-	-	-	-	-	-
'20	-	-	-	-	-	-	-	-	-
'21(안)	1,001	1,001			-	-	-	-	-

법정부담금
59 - 593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조정안	국회확정(B)	(B-A)	(B-A)/A
법정부담금	32,228	33,283	33,283	34,249	34,249	966	2.9

가. 법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

제37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나. 수입 개요

- 책임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국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책임보험료 또는 책임공제 금액의 일정비율(1%)을 징수
- 보험회사 등이 책임보험가입자로부터 책임보험료에 분담금율을 곱한 금액을 책임보험료와 함께 수납 후 익월말일에 기금관리자에게 납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7	31,708	31,708	31,708	32,986	32,986	104.0	100.0	-	-
'18	31,708	31,708	31,708	32,216	32,216	101.6	100.0	-	-
'19	33,183	33,183	33,183	32,228	32,228	97.1	100.0	-	-
'20	33,283	33,283	33,283	33,778	33,778	101.5	100.0	-	-
'21(안)	34,249	34,249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조정안	국회확정(B)	(B-A)	(B-A)/A
기타경상이전 수입	21,090	12,308	12,308	10,919	10,919	△1,389	△11.3

가. 법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

제39조 (청구권 등의 대위) ① 정부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代位行使)할 수 있다.

업무처리규정 제13조(분담금의 관리) ④ 보장사업자는 구상금 환입액등(수수료는 제외한다)을 구상금이 환입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해당금액을 분담금관리자에게 납입한다.

나. 수입 개요

- 정부보장사업으로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을 가해자로부터 구상하여 회수한 금액과 전년도 민간위탁사업비 잔액 반납금액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7	10,919	10,919	10,919	11,044	11,044	101.1	100.0	-	-
'18	25,636	25,636	25,636	15,411	15,411	60.1	100.0	-	-
'19	21,753	21,753	21,753	21,090	21,090	97.0	100.0	-	-
'20	12,308	12,308	12,308	10,970	10,970	89.1	100.0	-	-
'21(안)	10,919	10,919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5 - 754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

(단위: 백만원, %)

목 명	2019년 결 산 액	2020년 계 획 액		2021년		증 감	
		당 초	수 정 (A)	조 정 안	국 회 확 정 (B)	(B-A)	(B-A)/A
기타민간융자 원금회수	3,228	2,886	2,886	4,172	4,172	1,286	44.6

가. 법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제21조(지원대상자)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중증 후유 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한다.

제22조(지원의 기준 및 금액)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자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 생활자금의 대출

나. 수입 개요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유자녀에게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
- 최초 대출일로부터 만 18세되는 달까지 매월 20만원 지급한 대출금을 자녀가 30세가 되는 달부터 최대 20년 분할(월/분기/반기/년) 상환하여 발생한 수입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7	2,016	2,016	2,016	2,260	2,260	112.1	100.0	-	-
'18	2,117	2,117	2,117	2,618	2,618	123.7	100.0	-	-
'19	2,492	2,492	2,492	3,228	3,228	111.9	100.0	-	-
'20	2,886	2,886	2,886	3,599	3,599	124.7	100.0	-	-
'21(안)	4,172	4,172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 852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조정안	국회확정(B)	(B-A)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198,591	181,574	181,574	207,110	207,110	25,536	14.1

가. 법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12

제39조의12 (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7조에 따른 분담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나. 수입 개요

-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책임 보험료의 1%를 징수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지원 사업비로 사용 후 누적된 여유자금 중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7	196,315	196,315	196,315	214,184	214,184	109.1	100.0	-	-
'18	172,205	172,205	172,205	207,290	207,290	120.4	100.0	-	-
'19	173,213	173,213	173,213	198,591	198,591	114.7	100.0	-	-
'20	181,574	181,574	181,574	207,712	207,712	114.4	100.0	-	-
'21(안)	207,110	207,110							

2. 지출

사 업 명						
(1) 의무보험전산망 (464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자동차사고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120	126
명칭	피해지원기금				교통 및 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600	4641	300
명칭	자동차및교통정책	자동차사고피해지원	의무보험전산망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확정(B)	(B-A)	(B-A)/A
민간이전	2,381	2,437	2,437	2,322	2,322	△115	△4.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 말)						2021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의무보험전산망	2,381	2,381	2,381	2,381 (2,267)	-	-	2,437	2,437	2,437	2,437 (2,388)	-	-	2,322
· 유지보수비	734	734	734	734 (702)	-	-	816	846	846	846 (831)	-	-	710
· 운영관리비	1,647	1,647	1,647	1,647 (1,565)	-	-	1,621	1,591	1,591	1,591 (1,557)	-	-	1,612
○ 비목별 분류(계)	2,381	2,381	2,381	2,381 (2,267)	-	-	2,437	2,437	2,437	2,437 (2,388)	-	-	2,322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381	2,381	2,381	2,381 (2,267)	-	-	2,437	2,437	2,437	2,437 (2,388)	-	-	2,32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운영을 통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계기관에 의무보험 미가입 및 무보험 운행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질서 유지 및 대국민 편의성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 ② 추진경위 : '63.04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84.12 모든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02.02 자동차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구축
'03.08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구성·운영근거 신설(보험개발원 위탁)
'04.12 전산망을 이용한 무보험운행자 정보 제공
'05.02 대물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11.10 계약정보 문자안내서비스 실시
'12.05 민원상담센터 운영
'11.11 50CC미만 이륜자동차 가입 의무화
'15.02 건설기계 3종(트럭지게차,도로보수트럭,자주식노면측정장비) 가입 의무화
'17.01 분담금검증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2~현재(1년 단위로 사업수행)
- 사업규모 : 전산망센터(주센터, 백업센터, 민원상담센터) 전산장비(하드웨어 18종 62대, 소프트웨어 14종 47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험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지자체 과태료담당자·특사경·등록담당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자동차검사소, 자동차보유자, 보장사업자, 보험사 등

사 업 명						
(2) 피해자지원 (464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자동차사고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120	126
명칭	피해지원기금		자동차관리관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600	4641	301
명칭	자동차및교통정책	자동차사고피해지원	피해자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확정(B)	(B-A)	(B-A)/A
피해자지원	22,659	21,170	21,170	20,560	22,090	920	4.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 말)						2021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피해자지원	23,523	23,523	23,523	23,523 (22,659)	-	-	21,170	21,170	21,170	21,170 (20,146)	-	-	22,090
· 경제적지원	16,877	16,877	16,877	16,877 (16,617)	-	-	16,793	16,793	16,793	16,793 (16,152)	-	-	17,411
· 정서적지원	1,465	1,465	1,465	1,465 (1,427)	-	-	862	862	862	862 (805)	-	-	939
· 지원사업 홍보	255	255	255	255 (255)	-	-	175	234	234	234 (234)	-	-	189
· 관리운영비	3,426	3,426	3,426	3,426 (2,860)	-	-	3,340	3,281	3,281	3,281 (2,955)	-	-	3,271
· 피해예방사업	1,500	1,500	1,500	1,500 (1,500)	-	-	-	-	-	-	-	-	280
○ 비목별 분류(계)	23,523	23,523	23,523	23,523 (22,659)	-	-	21,170	21,170	21,170	21,170 (20,146)	-	-	22,090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3,523	23,523	23,523	23,523 (22,659)	-	-	21,170	21,170	21,170	21,170 (20,146)	-	-	22,09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목적) 자동차사고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유지와 재활을 돕고, 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경제적지원) 자동차사고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및 그 가족(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조하고 원활한 재활을 지원
- (정서적지원) 심리안정서비스 등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여 수혜가정의 삶의 질 향상 및 유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지원
- (지원사업홍보)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과 신규 지원자 발굴
- (관리운영비) 피해자 지원사업 사업경비(인건비·복리후생비·경비)
- (피해예방사업) 자동차사고 피해보상 등 사후적 조치에서 피해예방 등의 선제적 조치로 전환하여 국민안전 강화 및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등 시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② 추진경위 : '99.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법률 공포(법률 제5793호)
'99.9 자동차사고 유자녀등 지원업무 규정 제정(건설교통부 예규 제10호)
'00.1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 개시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0년 ~ 계속(1년 단위로 사업수행)
- 사업규모 : 재활보조금 4,909명(12,960백만원), 피부양보조금 938명(2,476백만원), 자립지원금 1,008명(847백만원), 장학금 940명(1,128백만원) 등 총 7,795명(17,411백만원)에게 경제적 지원 및 심리안정지원 서비스, 유자녀 멘토링 서비스 등 정서적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교통안전공단
- 사업 수혜자 : 자동차사고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및 그 가족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 정부보장사업 (464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자동차사고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120	126
명칭	피해지원기금		자동차관리관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600	4641	302
명칭	자동차및교통정책	자동차사고피해지원	정부보장사업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확정(B)	(B-A)	(B-A)/A
민간이전	20,114	18,102	18,102	17,624	17,624	△478	△2.6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 말)						2021 예 산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정부보장사업	20,114	20,114	20,114	20,114 (17,110)	-	-	18,102	18,102	18,102	18,102 (16,808)	-	-	17,624
· 무보험 · 뺑소니보상	17,586	17,586	17,586	17,586 (14,966)	-	-	16,093	15,593	15,593	15,593 (14,489)	-	-	15,123
· 미반환가불금	1,000	1,000	1,000	1,000 (963)	-	-	5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 신고포상금	5	5	5	5 (-)	-	-	5	5	5	5 (-)	-	-	3
· 관리운영비	1,523	1,523	1,523	1,523 (1,181)	-	-	1,504	1,504	1,504	1,504 (1,319)	-	-	1,498
○ 비목별 분류(계)	20,114	20,114	20,114	20,114 (17,110)	-	-	18,102	18,102	18,102	18,102 (16,808)	-	-	17,624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0,114	20,114	20,114	20,114 (17,110)	-	-	18,102	18,102	18,102	18,102 (16,808)	-	-	17,62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정부보장사업 시행으로 불법차량에 의한 국민안전 보장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1항
- ② 추진경위
 - '78. 4 : 뺑소니차량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장사업 시행
 - '85. 7 :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추가
 - '02. 8 : 보장사업업무 위탁사업자 확대 지정(1개사→8개사), 분담금관리자로 협회 지정
 - '05. 7 :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시행(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 협회 지정)
 - '09. 2 : 미반환가불금 보상비율 상향(70%→ 100%)
 - '10. 2 : 채권정리위원회 운영 위탁
 - '12. 9 :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 지급업무 위탁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2~계속(1년 단위로 사업수행)
- 사업규모 :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상(부상·후유장애시 최대 1.5억)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
- 사업 수혜자 :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4) 생활지원 및 학자금 융자 (464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자동차사고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120	126
명칭	피해지원기금		자동차관리관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600	4641	303
명칭	자동차및교통정책	자동차사고피해지원	생활지원 및 학자금(융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확정(B)	(B-A)	(B-A)/A
생활지원 및 학자금(융자)	1,807	1,700	1,108	1,104	1,104	△4	△0.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 말)						2021 예 산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생활지원 및 학자금	1,807	1,807	1,807	1,807 (1,392)	-	-	1,700	1,108	1,108	1,108 (1,095)	-	-	1,104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1,807	1,807	1,807	1,807 (1,392)	-	-	1,700	1,108	1,108	1,108 (1,095)	-	-	1,104
○ 비목별 분류(계)	1,807	1,807	1,807	1,807 (1,392)	-	-	1,700	1,108	1,108	1,108 (1,095)	-	-	1,104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807	1,807	1,807	1,807 (1,392)	-	-	1,700	1,108	1,108	1,108 (1,095)	-	-	1,10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목적)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유자녀에 대한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
- (내용) 월 20만원 무이자대출, 유자녀가 만 30세가 되는 달부터 상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② 추진경위 : '00부터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사망자 가정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0년 ~ 계속(1년 단위로 사업수행)
- 사업규모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대상자 460명(1,104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교통안전공단
- 사업 수혜자 : 자동차사고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및 그 가족으로서, 기초 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사 업 명						
(5) 국립교통재활병원 (464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자동차사고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120	126
명칭	피해지원기금		자동차관리관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600	4641	304
명칭	자동차 및 교통정책	자동차사고피해지원	국립교통재활병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확정(B)	(B-A)	(B-A)/A
민간이전	3,480	8,240	8,832	7,853	7,853	△979	△11.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 말)						2021 예 산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3,480	3,480	3,480	3,480 [3,472]	-	-	8,240	8,832	8,832	8,832 (8,737)	-	-	7,853
· 운영교부금	1,176	1,176	1,176	1,176 [1,176]	-	-	3,480	3,640	3,640	3,640 (3,640)	-	-	3,480
· 시설장비	1,462	1,462	1,462	1,462 [1,454]	-	-	3,760	4,142	4,142	4,142 (4,122)	-	-	3,373
· 운영지원	842	842	842	842 [842]	-	-	-	-	-	-	-	-	-
· 재활연구	-	-	-	-	-	-	1,000	1,050	1,050	1,050 (975)	-	-	1,000
○ 비목별 분류(계)	3,480	3,480	3,480	3,480 [3,472]	-	-	8,240	8,832	8,832	8,832 (8,737)	-	-	7,853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480	3,480	3,480	3,480 [3,472]	-	-	8,240	8,832	8,832	8,832 (8,737)	-	-	7,85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아급성기 교통사고환자들이 재활전문병원에서 집중 전문재활치료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제1항
- ② 추진경위: '14.10월 국립교통재활병원 개원 및 위탁운영 개시
* (1기, '14.10~'19.9) 가톨릭중앙의료원, (2기, '19.10~'24.9) 서울대학교병원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4년 10월 ~ 계속(1년 단위로 사업 수행)
- 사업규모 : 전체 302명상 중 229명상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서울대학교병원('19.10~'24.9)
- 사업 수혜자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및 아급성기의 교통사고 환자

사 업 명						
(6)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464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자동차사고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120	126
명칭	피해지원기금		자동차관리관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600	4641	305
명칭	자동차및교통정책	자동차사고피해지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확정(B)	(B-A)	(B-A)/A
자동차손해 배상진흥원	650	858	858	637	637	△ 221	△ 25.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 말)						2021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	650	650	650	650 (620)	-	-	858	858	858	858 (757)	-	-	637
· 공제조합 정책 수립 및 감독· 검사	250	250	250	250 (235)	-	-	458	458	458	458 (380)	-	-	297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	150	150	150	150 (138)	-	-	140	140	140	140 (117)	-	-	100
· 시스템구축	250	250	250	250 (247)	-	-	260	260	260	260 (260)	-	-	240
○ 비목별 분류(계)	650	650	650	650 (620)	-	-	858	858	858	858 (757)	-	-	637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650	650	650	650 (620)	-	-	858	858	858	858 (757)	-	-	63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자동차공제사업자 감독 관련 정책수립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3

② 추진경위 :

- '79.6~'97.12 법인택시를 시작으로 '97년까지 5개 공제조합* 허가
* 택시('79.6)·화물('81.7)·버스('81.12)·개인택시('93.2)·전세버스('97.12)
- '12.10 렌터카 공제조합을 별도법인으로 인가
- '13.12~'16.1 전문적인 공제조합 지도·감독과 손해배상제도 연구·지원 등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
- '17.12~'18.3 운수단체 간담회, 운수단체 연합회장 개별 면담(총15회) 등을 통해 진흥원 추진 설득 및 협의
- '18.9~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개원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자동차공제조합, 자동차사고피해자

사 업 명
(7) 기금운영비 (465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자동차사고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120	126
명칭	피해지원기금		자동차관리관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600	4651	306
명칭	자동차및교통정책	기금운영비(자동차기금)	기금운영비(기금운영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확정(B)	(B-A)	(B-A)/A
기금운영비	-	92	92	93	93	1	1.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 말)						2021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금운영비	-	-	-	-	-	-	92	92	92	52	-	-	93
· 인건비	-	-	-	-	-	-	40	40	40	- (-)	-	-	39
· 운영비							50	50	50	50 (50)			52
· 업무추진비	-	-	-	-	-	-	2	2	2	2 (2)	-	-	2
○ 비목별 분류(계)	-	-	-	-	-	-	92	92	92	52	-	-	93
· 상 용 임 금 (110-03)	-	-	-	-	-	-	40	40	40	- (-)	-	-	32
· 일 반 수 용 비 (210-01)	-	-	-	-	-	-	50	50	50	50 (50)	-	-	52
· 복 리 후 생 비 (210-12)	-	-	-	-	-	-	-	-	-	-	-	-	1
· 사 업 추 진 비 (240-01)	-	-	-	-	-	-	2	2	2	2 (2)	-	-	2
· 고 용 부 담 금 (320-09)	-	-	-	-	-	-	-	-	-	-	-	-	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사업성 기금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영 및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12
- ② 추진경위 :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부담금의
기금 편입 결정('16.3)
기금 설치를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16.12)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신설('17.1)

사 업 명						
(8) 통화금융기관예치금 (9701-97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자동차사고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120	126
명칭	피해지원기금		자동차관리관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1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금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확정(B)	(B-A)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207,711	180,973	180,973	210,484	208,954	27,981	15.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 말)						2021 예 산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81,574	181,574	181,574	207,711	-	-	180,973	180,973	180,973	204,177	-	-	208,954
· 여유자금 운용	181,574	181,574	181,574	207,711	-	-	180,973	180,973	180,973	204,177	-	-	208,954
○ 비목별 분류(계)	181,574	181,574	181,574	207,711	-	-	180,973	180,973	180,973	204,177	-	-	208,954
· 통화금융기관 예 치 금 (470-02)	181,574	181,574	181,574	207,711	-	-	180,973	180,973	180,973	204,177	-	-	38,376
· 비통화금융 기관예치금 (470-03)	-	-	-	-	-	-	-	-	-	-	-	-	170,57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하여 누적된 잉여자금을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 융자사업 등에 운용하고 남은 잉여자금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13